회사법

(公司法)

민국 98년 05월 27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무한공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회사의 대외관계

제4절 주식반환

제5절 해산, 합병 및 조직의 변경

제6절 청산

제3장 유한공사

제4장 양합공사

제5장 주식유한공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3절 주주회

제4절 이사 및 이사회

제5절 감찰인

제6절 회계

제7절 회사채

제8절 신주의 발행

제9절 정관의 변경

제10절 회사의 구조조정

제11절 해산, 합병 및 분할

제12절 청산

제1목 일반 청산

제2목 특별 청산

제6장 (삭제)

제6장의 1 관계기업

제7장 외국회사

제8장 회사의 등기 및 허가

제1절 신청

제2절 수수료

제9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에서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조직, 등기,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2조 회사는 다음의 4종류로 구분한다.

一. 무한공사 : 2인 이상의 주주가 조직하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적인 청산책임을 연대하는 회사를 말한다.

二. 유한공사 : 1인 이상의 주주가 조직하고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三. 양합공사 : 1인 이상의 무한책임 주주가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주주와 조직하고 그 무한책임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의 청산책임을 연대하는 것을 말한다. 유한책임주주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四. 주식유한공사 : 2인 이상의 주주 또는 정부, 법인 주주 1인이 조직하고 전체 자본을 주식으로 하며 주주가 인정한 주식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회사의 명칭은 공사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회사는 그 본사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한다.

이 법에서 본사란 법에 따라 최초로 설립하고 전체 조직을 관할하는 총기구를 말한다. 지사란 본사의 관할을 수용하는 지사기구를 말한다.

제4조 이 법에서 외국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법률에 따라 조직하여 등

기하고 중화민국정부의 허가를 거쳐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5조 이 법에서 주관기관이란 중앙은 경제부이며 직할시는 직할시정부를 말한다.

중앙주관기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기타 기관에 위탁 또는 위탁처리할 수 있다.

제6조 회사는 중앙 주관기관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설립할 수 없다.

제7조 회사의 신청설립, 변경등기의 자본액은 우선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8조 이 법에서 회사 책임자란 무한공사, 양합공사는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를 말한다. 유한공사, 주식유한공사는 이사를 말한다.

회사의 경리인 또는 청산인은 주식유한공사의 발기인, 감찰인, 조사인, 구조조정인 또는 조정감독인을 말하며 업무 집행의 범위 내에서 역시 회사의 책임자를 담당한다.

제9조 회사의 자본금은 주주가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신청문건에 접수하였음을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주주가 비록 이미 납입하였으나 등기 후 주주에게 반환하거나 주주의 임의대로 회수한 경우 회사책임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5십만원(NT)[1]

[1] NT : 대만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단위 동일.

이상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정황이 있을 시 회사책임자는 각 주주와 연대하여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 배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후 감찰기관은 중앙 주관기관에 그 등기의 취소 또는 폐지를 신청한다. 다만 판결 확정 전이 이미 시정하였거나 주관기관을 거쳐 기한부 시정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설립 또는 기타 등기사항에 위조, 변조한 문서가 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감찰기관이 중앙 주관기관에 그 등기의 취소 또는 폐지를 통지한다.

제10조 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一. 회사의 설립등기 후 6개월 이내에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미 등기를 연장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二. 영업 개시 후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경우. 다만 이미 등기를 연장한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사의 경영에 현저한 곤란 또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시 법원은 주주의 신청에 근거하여 주관기관 및 목적 사업의 중앙 주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회사가 답변하도록 통지한 후 해산을 재정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주식유한공사는 6개월 이상 기발행 주식 총수의 10%을 소유한 주주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의 설립등기 후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나 등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미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으나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3조 회사는 타회사의 무한책임주주 또는 합동사업의 합동인이 될 수 없다. 만약 타회사의 유한책임주주가 되었을 시 그 소유한 투자 총액은 투자가 전문 업종이거나 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다음 각 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취득하거나 주주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의 실제 납입자본의 4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무한공사, 양합공사가 전체 무한책임주주의 동의를 거친 경우.

二. 유한공사가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친 경우.

三. 주식유한공사가 기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대표하여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가 동의한 주주회의 의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는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가 전항 제3관의 일정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제3관 및 제2항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액 및 의결권 수에 있어 정관에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윤 또는 적립증자배분 주식으로 인하여 얻은

주식은 제1항의 투자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회사의 자금은 다음 각 관의 정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 또는 어떠한 타인에게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회사 간 또는 업종 간에 업무왕래가 있는 경우.

二. 회사 간 또는 업종 간에 단기 금융융통자금이 필요한 경우. 융자금액은 기업자산의 40%를 초과하여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사가 기타 법률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보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스스로 책임을 보증하여야 하며 만약 회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역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사의 업무는 법률 또는 법률에 따라 수권하여 정한 명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경우 허가문건을 취득한 후에야 회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 업무의 허가는 목적 사업 주관기관이 취소 또는 폐지를 확정한

경우 같은 목적 사업 주관기관이 중앙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회사의 등기 또는 부분 등기 사항을 취소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17-1조 회사의 경영에 있어 법령에 따라 휴업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기관이 중앙 주관기관에 통지하고 그 회사의 등기 또는 부분 등기 사항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사의 명칭은 타회사의 명칭과 동일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회사의 명칭 중 동일하지 아니한 업무 종류를 명기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문자를 명기한 경우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은 허가된 업무를 정관에 명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은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영업항목코드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이미 설립등기한 회사의 영업사업이 문자로 서술된 경우 경영사업을 변경할 시 코드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부기관, 공익기관으로 오인하기 용이하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손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명칭 및 업무는 회사의 등기 전에 우선 비준을 신청하고 일정 기간을 보류하여야 한다. 그 심사준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19조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 명의로 업무를 경영하거나 기타 법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위인은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15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하며 스스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행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연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고 주관기관이 그 회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20조 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영업보고서, 재무재표 및 이윤분배 또는 손실 보충에 관한 의안을 주주의 동의 또는 주주상임회의의 승인을 제청하여야 한다.

회사자본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 액수 이상에 달하는 경우 그 재무재표는 우선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검증규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증권관리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회계사의 위임, 해임 및 보수는 제29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보고서는 주관기관이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거나 그 기한부 신고를 명령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회사책임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각각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조사를 거절 또는 회피하거나 기한이 되어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각 신대만

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주관기관은 목적 사업기관의 주관기관과 회동하여 수시로 인원을 파견하여 회사 업무 및 재무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회사책임자는 이를 방해, 거절,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조사를 방해, 거절, 회피하는 경우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방해, 거절, 회피하는 경우 회수에 따라 각각 신대만폐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시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인원을 선임하여 처리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주관기관은 재20조가 정하는 각 항목의 보고서를 조사하거나 전 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무상황을 조사할 시 회사에 증명문건, 영수증, 장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을 유지하고 수수 후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출을 거절할 시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거절하는 경우 회수에 따라 각각 신대만폐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회사책임자는 충실하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항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는 회사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타인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해산하는 회사는 합병, 분할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 범위 내에서 아직 해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6조 전 조의 해산하는 회사는 청산 기한 중 현 업무의 완료 및 청산에 편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잠시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제26-1조 회사는 중앙 주관기관이 취소하거나 등기를 폐지한 경우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인 경우 이사 또는 감찰인으로 당선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자연인이 대표로 직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인 경우 그 대표인이 이사 또는 감찰인으로 당선될 수 있으며 대표인이 복수인 경우 각각 당선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대표인은 그 직무관계에 따라 수시로 수시로 원임기를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의 대표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한으로 선의의 제삼자

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회사의 공고는 회사가 소재한 직할시 또는 현(시) 일보의 현저한 부분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증권관리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8-1조 주관기관이 법에 따라 회사에 공문을 송부하여야 하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책임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책임자에게도 여전히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경영인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위임, 해임 및 보수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회사 정관에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一. 무한공사, 양합공사는 반드시 전체 무한책임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二. 유한공사는 전체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三. 주식유한공사는 이사회의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에 제156조 제7항의 정황이 있는 경우 전문 안건을 조사하는 주관기관은 정부에 관련 회사의 자구계획에 참여를 요청하고 그 경영인의 보수 또는 기타 필요한 처치 또는 제한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경영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제30조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경영인을 담당할 수 없으며 이미 담당한 경우 당연히 해임하여야 한다.

一. 범죄방지조례(犯罪防制條例)가 규정하는 죄를 범하고 유죄판정 확정을 거쳐 형을 복역하였으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二. 사기, 배신, 침점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을 복역하였으나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三. 공무용 공금을 횡령하고 판결 확정을 거쳐 형을 복역하였으나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四.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五. 어음 사용 거래 금지조치가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六. 무능력자이거나 한정행위능력자인 경우.

제31조 경영인의 직권은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경영인은 회사 정관 또는 계약이 규정하는 수권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무를 관리하고 서명할 권한이 있다.

제32조 경영인은 기타 영리사업의 경영인을 겸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경영하거나 타인이 동류의 업무를 경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경영인은 이사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

나 주주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변경하거나 기 규정된 권한을 초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경영인은 법령, 정관 또는 전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회사는 경영인의 직권에 가해지는 제한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2장 무한공사

제 1 절 설립

제40조 무한공사의 주주는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반수는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주주는 전체의 동의로 정관을 설립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하고 모두가 각각 1부씩 소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무한공사의 정관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회사 명칭.

二. 경영하는 사업.

三. 주주 성명, 주소 또는 거주지.

四. 자본총액 및 각 주주의 출자액.

五. 각 주주가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한 경우 그 종류, 수량, 가격 또는 추정가격의 기준.

六. 이윤 및 손실 분배 비례 또는 기준.

七. 본사 소재지. 지사를 설립한 경우, 그 소재지.

八.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를 결정한 경우, 그 주주의 성명.

九.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를 결정한 경우, 그 주주의 성명.

一0. 해산사유를 결정한 경우, 그 해산 사유.

一一. 정관을 설립한 연, 월, 일.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는 전항 정관이 본사에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설치를 거절한 경우 회수에 따라 연속으로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42조 회사의 내부관계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주주는 신용, 노무 또는 기타 권리로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제41조 제1항 제5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주주는 채권으로 주식을 상쇄하고 그 채권이 기한이 만료하여도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주주가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 각 주주는 모두 업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주주 중 1인 또는 다수의 업무를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항의 업무 집행 주주는 반드시 반 수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제46조 주주의 다수 또는 전체가 업무를 집행할 시 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과반수의 동의로 진행하여야 한다.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는 통상적인 사무에 대해 각자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나머지 주주는 1인이 이의를 제기할 시 즉시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7조 회사의 정관 변경은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8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수시로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에게 회사 영업상황을 질문하고 재산문건,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49조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는 특약이 있지 않고서는 회사에 보수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주주는 업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대금에 대하여 회사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가 아직 만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는 업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자신의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회사 정관에 주주 중 1인 또는 다수가 업무를 집행할 시 같은 주주가 이유없이 사직할 수 없으며 타주주 또한 이유없이 그가 사직하도록 하게 할 수 없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2조 주주의 업무집행은 법령, 정관 및 주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3조 주주 대신 수수한 회사의 대금을 상당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 공금을 유용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일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54조 주주가 기타 주주 전체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회사의 무한책임주주 또는 합동사업의 합동인을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는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회사와 동류의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주주는 과반수 의결을 통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소득을 회사의 소득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 주주는 기타 주주 전체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출자한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회사의 대외관계

제56조 회사는 정관에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각 주주는 모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제45조 제2항의 규정은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에 준용한다.

제57조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는 회사의 영업 상의 일체 사무에 대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다.

제58조 회사가 주주의 대표권에 가하는 제한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는 만약 자신 또는 타인과 회사를 위하여 매매, 차용 또는 기타 법률행위를 하였을 시 동시에 회사의 대표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회사가 채무를 청산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회사의 자산에 청산에 부족한 경우 주주가 연대하여 청산책임을 부담한다.

제61조 회사에 가입하여 주주가 된 경우 가입 전 회사에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2조 주주가 아니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경

우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주주와 동일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3조 회사는 손실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이윤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할 시 각각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제64조 회사의 채무인은 그 채무와 주주에 대한 채권으로 상쇄할 수 없다.

제4절 주식반환

제65조 정관에 회사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는 매 회계연도 종료시에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성명하여야 한다.

주주는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 회사의 존속기한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시로 주식을 반환할 수 있다.

제66조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주주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식을 반환할 수 있다.

一. 정관에서 규정하는 주식 반환 사유.

二. 사망.

三. 파산..

四. 감호 또는 보조 선고.

五. 제명.

六. 주주의 출자가 법원의 강제집행을 선고받은 경우.

전항 제6관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시 집행하는 법원은 2개월 이전에 회사 및 기타 주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 주주에 다음 각 관 사항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타 주주의 전체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같은 주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一. 출자하여야 하는 자본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二.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三. 부정당한 행위가 있어 회사의 이익을 방해한 경우.

四. 회사에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회사의 명칭 중 주주의 성 또는 성명이 있는 경우 같은 주주가 주식을 반환할 시 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 주식을 반환한 주주와 회사의 결산은 주식의 반환 시 회사 재산의 상황을 기준하여야 한다.

주식을 반환하는 주주의 출자는 그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현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주주가 주식을 반환할 시 회사의 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종료 후 그 손익을 계산하여 이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제70조 주식을 반환하는 주주는 주관기관에 등기신청하고 등기 전 회사의 채

무에 대하여 등기 후2년 이내에 연대 무한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주주가 그 출자를 양도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해산, 합병 및 조직의 변경

제71조 회사의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一. 정관에서 규정하는 해산 사유.

二.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될 수 없는 경우.

三. 주주 전체의 동의.

四. 주주에 변동 사항이 있어 이 법이 규정하는 최저인원수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五. 타회사와의 합병.

六. 파산.

七. 해산의 명령 또는 판결.

전항의 제1관, 제2관은 전체 또는 일부 주주의 동의를 거쳐 계속 경영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식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다.

제1항 제4관은 가입한 새주주가 계속 경영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정황으로 인하여 계속 경영할 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2조 회사는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쳐 타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제73조 회사가 합병을 의결할 시 자산부채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의 합병 결의 후 각 채권인에 대항 각각 통지 및 공고하고 30일 이상의 기한을 지정하여 채권인이 채권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성명하여야 한다.

제74조 회사가 전 조의 통지 및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인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채권인에게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제76조 회사는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쳐 일부 주주를 유한책임으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유한책임주주를 가입하게 하여 그 조직을 양합공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은 제71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 경영하는 회사에 준용한다.

제77조 회사는 전 조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시 제73조에서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 주주가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으로 변경할 시 그 회사 조직의 변경 전의 회사 채무는 회사 변경 후 2년 이내에 여전히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제6절 청산

제79조 회사의 청산은 전체 주주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청산인을 선정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0조 주주 전체가 청산할 시 주주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청산 사무는 그 승계인이 대행한다. 승계인이 복수인 경우 승계인이 서로 1인을 추천하여 대행한다.

제81조 제79조 규정에 따라 그 청산인을 확정할 수 없을 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2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그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주주가 선임한 청산인 역시 주주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83조 청산인은 취임 후 15일 이내에 그 성명, 주소, 또는 거주지 및 취임 일자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해임은 주주가 15일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임 시 역시 동일하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 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신대만폐 3천원 이상 1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 직무의 완료.

二. 채권의 수취, 채무의 청산.

三. 이윤 또는 손실의 분배.

四. 잔여 재산의 분배.

청산인이 전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하는 소송 또는 소송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회사가 자산부채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시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5조 청산인이 복수일 시 1인 또는 수인을 추천하여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추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제삼자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청산 사무에 관한 집행은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추정은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에 신고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청산인의 권한에 대한 제한으로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취임 후 회사 재산에 관한 정황을 자산부채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각 주주에 발송하고 열람하게 한다.

전항의 조사에 대하여 방해, 거절, 회사행위를 하는 경우 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산인은 6개월 이내에 청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청산

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청산인은 그 이유를 서술하고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산인은 주주의 질의에 대하여 청산 정황에 따라 수시로 답변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 청산인은 취임 후 공고의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명백히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 회사의 재산이 청산에 부족할 시 청산인은 즉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그 사무를 파산관리인에게 이전할 시 직무는 즉시 종료된다.

청산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산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 청산인이 회사의 채무를 청산하지 아니하고 회사 재산을 각 주주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산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의 재산을 분배할 시 각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제91조 잔여 재산의 분배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에게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92조 청산인은 청산을 완료한 후15일 이내에 결산장부를 작성하여 각 주주에게 송부하고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만약 주주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산인이 불법행위가 있을 시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3조 청산인은 청산을 완료한 후 각 주주의 승인을 받은 지15일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신고 기한을 위반할 시 신대만폐 3천원 이상 1만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회사의 장부 및 영업과 청산에 관한 문건은 청산완료 후 법원 신고일로부터 10년을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인은 주주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95조 청산인은 선의의 관리인에게 관리 직무를 신중하게 담당하도록 하고 태만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할 시 회사에 대하여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시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6조 주주의 연대 무한책임은 해산등기 후 만 5년이 되면 소멸한다.

제97조 청산인과 회사의 관계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위임에 관한 유관규정에 따른다.

제3장 유한공사

제98조 유한공사는 1인 이상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는 전체의 동의로 정관을 설립하고 서명하고 날인한 후 본사에 비치하고 각자 1부씩 소지한다.

제99조 각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출자액에 한한다.

제100조 회사의 자본총액은 각 주주가 전부 납입하며 분할 납부하거나 외부에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명칭.

二. 경영하는 사업.

三.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주지.

四. 자본 총액 및 각 주주의 출자액.

五. 이윤 및 손실분배 비율 또는 기준.

六. 본사의 주소지. 지사가 있는 경우, 그 소재지.

七. 이사의 인원수.

八.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

九. 정관을 설립한 연, 월, 일.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항의 정관을 본사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비치를 거부한 경우 회수에 따라 연속으로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2조 모든 주주는 출자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의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정관에 출자액의 비례에 따라 표결권의 분배를 정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인 경우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 회사는 본사에 주주명부를 설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각 주주의 출자액 및 주식번호.

二. 각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거주지.

三. 자본금 납입 연, 월, 일.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가 전항의 주주명부를 본사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비치를 거부한 경우 회수에 따라 연속으로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 회사의 설립 등기 후 주식명단을 발급하고 다음 각 관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명칭.

二. 등기 설립 연, 월, 일.

三.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출자액.

四. 주식명단을 발급한 연, 월, 일.

제162조 제2항, 제163조 제1항의 단서, 제164조의 규정은 전항의 주식명단에 준용한다.

제105조 회사의 주식명단은 전체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조 회사의 증자는 주주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는 증자에 동의하여도 여전히 원 출자액의 비례에 따라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다.

전항의 증자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정관에 증자로 인하여 개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을 시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쳐 새 주주가 참여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쳐 감자하거나 그 조직을 주식유한공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7조 회사가 조직 변경 의결을 한 후에는 즉시 각 채권인에게 각각 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조직 변경 후의 회사는 조직 변경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제108조 회사는 최소한 이사 1인을 설치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게 하여야 하며, 최대 3인의 이사를 설치하여 3분의 2 이상 주주의 동의를 거쳐 행위능력을 구비한 주주 중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가 수인에 달할 시 정관에 특정 이사를 이사장으로 설치하고 대

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휴가를 신청하거나 유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이사 1인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한다.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시 주주 간에 서로 1인을 추천하여 대리하게 한다.

이사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회사와 동류의 업무를 경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체 주주에게 그 행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제46조, 제49조에서 제53조, 제54조 제3항, 제57조에서 제59조, 제208조 제3항, 제208조의 1 및 제211조의 규정은 이사에 준용한다.

제109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모두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감찰권의 행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 매 회의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이사는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장부를 작성하고 모든 주주에게 발송하며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장부를 송달한 후 1개월이 초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1조에서 제233조, 제235조에서 제245조 제1항의 규정은 유한공사에 준용한다.

제111조 주주는 기타 전체 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항의 양도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주주는 우선적인 수양권을 향유한다. 만약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관의 주주 및 그 출자액에 관련된 유관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의 이사는 기타 전체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출자한 전부 또는 일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주주의 출자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 회사 및 기타 전체 주주에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양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수양인이 동일 조건에 따라 수양하지 아니할 시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정된 정관의 주주 및 그 출자액과 관련된 유관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 회사는 일체의 세금을 납부하고 이윤을 분배할 시 우선 10%를 법정 이윤적립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이윤적립이 이미 자본총액에 도달하였을 시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법정이윤적립금을 제외하고 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주주 전체의 동의를 거쳐 별도의 특별이윤적립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이윤적립금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을 시 각각 신대만폐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113조 회사의 정관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은 무한공사의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양합공사

제114조 양합공사는 무한책임주주와 유한책임주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청산책임을 부담한다. 유한책임주주는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15조 양합공사는 이 장의 규정 이외에도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양합공사의 정관은 제41조에 열거한 각 관의 사항 이외에도 각 주주의 책임이 무한인지 유한인지의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17조 유한책임주주는 신용 또는 노무로 출자할 수 없다.

제118조 유한책임주주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회사 장부, 업무 및 재산 정황을 열람할 수 있다. 필요 시 법원은 유한책임주주의 신청에 따라 수시로 회사의 장부, 업무 및 재산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전항의 조사를 방해, 거절 또는 회피 행위를 하는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방해, 거절 또는 회피하는 경우 회수에 따라 연속으로 각각 신대만폐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 유한책임주주는 무한책임주주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1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

제120조 유한책임주주는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본사와 동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타회사의 무한책임주주 또는 합동사업의 합동인이 될 수 있다.

제121조 유한책임주주가 만약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책임주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주주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2조 무한책임주주는 회사업무를 집행하거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제123조 무한책임주주는 감호 또는 보조선고로 인하여 주식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유한책임주주 사망 시 그 출자는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제124조 유한책임주주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한책임주주 과반수의 동의로 주식을 반환하거나 법원에 주식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5조 유한책임주주가 다음 각 관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전체 무한책임주주의 동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一. 출자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二. 부정당한 행위가 있어 회사의 이익을 방해한 경우.

전항의 제명은 각 주주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제126조 회사는 무한책임주주 또는 유한책임주주 전체의 주식반환으로 해산한다. 다만 나머지 주주의 만장일치로 무한책임주주 또는 유한책임주주에 가입하여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전항의 유한책임주주 전체가 주식을 반환하였을 시 무한책임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만장일치로 그 조직을 무한책임공사로 변경할 수 있다.

무한책임주주와 유한책임주주 전체의 동의로 조직을 무한공사로 변경하였을 시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7조 청산은 전체 무한책임주주가 임명한다. 다만 무한책임주주가 과반수의 동의로 별도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해임 역시 동일하다.

제5장 주식유한공사

제1절 설립

제128조 주식유한공사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는 발기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 또는 법인은 모두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발기인인 경우 다음의 정황에 한한다.

一. 회사.

二.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투자하는 법인.

三. 목적 사업주관기관의 인정을 거쳐 그 창설목적에 속하는 관련 비준을 획득한 법인.

제128-1조 정부 또는 법인 주주 1인이 조직한 주식유한공사는 전 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 회사의 주주회 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며 이 법의 주주회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 회사의 이사, 감찰인은 정부 또는 주주가 지정하여 파견한다.

제129조 발기인은 전체의 동의로 정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관의 정황을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다.

一. 회사의 명칭.

二. 경영하는 사업.

三. 주식 총수 및 주식 1주 당 금액.

四. 본사 소재지.

五. 이사 및 감찰인의 인원 수 및 임기.

六. 정관 설립 연, 월, 일.

제130조 다음 각 관의 사항을 정관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一. 지사의 설립.

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 설립 시 정한 발행액수.

三. 해산 사유.

四. 특별주식의 종류 및 그 권리와 의무.

五. 발기인이 취득할 수 있는 특별이익 및 수익인의 성명.

전항 제5관의 발기인이 취득할 수 있는 특별이익은 주주회가 개정하거나 취소한다. 다만 발기인이 기득 이익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1조 발기인이 제1차로 발행한 주식이 충분할 시 즉시 자본금을 납부하고 이사 및 감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항의 선임방법은 제1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자본금은 회사 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32조 발기인이 최초로 발행한 주식이 충분하지 아니할 시 모집하여야 한다.

전항의 주식모집 시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33조 발기인이 공개로 주식을 모집할 시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증권관리기관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 영업계획서.

二. 발기인의 성명, 경력, 주식종목 및 출자종류.

三. 모집 주식의 정관.

四. 주식대금을 대리 접수하는 은행 또는 우체국의 명칭 및 주소.

五. 판매 또는 대행기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약정 사항.

六. 증권관리기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사항.

전항의 발기인이 인정하는 주식은 최초로 발행한 주식의 4분의 1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각 관은 증권관리기관이 통지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준문건번호 및 연, 월, 일을 명기하여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관의 약정사항은 공고를 면할 수 있다.

제134조 주식대금을 대리접수하는 은행 또는 우체국은 대리접수하는 주식대금에 대하여 이미 금액을 수수하였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그 증명하는 기접수금액은 주식대금을 이미 접수한 금액으로 즉시 인정할 수 있다.

제135조 주식의 공개발행 모집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증권관리기관은 비준하지 아니하거나 비준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신청사항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二. 신청사항에 변경이 있어 기한부로 시정하여야 하나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이 전항 제2관의 정황이 있을 시 증권관리기관이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 전 조의 비준을 취소하였으나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모집을 중지한다. 이미 모집한 경우 모집인은 주식의 원발행금액에 따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7조 주식모집 정관은 다음 각 관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제129조 및 제130조에서 열거하는 각 관의 사항.

二. 각 발기인이 인정하는 주식 수.

三. 주식이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금액.

四. 주식모집 충족 기한 및 기한이 초과하여도 충족되지 아니할 시 주식청약인이 주식청약 철회의 성명.

五. 특별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총액 및 제157조 각 관의 규정.

六.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총액.

제138조 발기인은 주식인증서를 구비하여 제133조 제1항의 각 관의 사항을 명기하고 증권관리기관의 비준문건번호 및 연, 월, 일을 기재하여 인수주식수, 금액 및 그 주소 또는 거주지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청약인은 주식청약서에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청약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관리기관은 각각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 주식청약인은 주식청약서에 작성한 주식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제140조 주식의 발행가격은 액면가격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회사에 있어 증권관리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41조 최초로 발행한 주식총수가 충족된 경우 발기인은 즉시 주식청약인에게 주식대금 납부를 요청하고 액면가격을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주식대금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주식청약인이 전조의 납부하여야 하는 주식대금을 연체한 경우 발기인은 1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같은 주식청약인에게 납부를 최고하고 기한이 초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리의 상실을 성명할 수 있다.

발기인이 이미 전항의 최고를 하고도 주식청약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하며 인수한 주식은 별도로 모집한다.

전항의 정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전히 주식청약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3조 전 조의 주식대금이 납부된 후 발기인은 2개월 이내에 창립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4조 창립회의 절차 및 의결은 제172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174조에서 제179조,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사 및 감찰인의 선임에 대하여 제1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5조 발기인은 다음 각 관의 사항을 창립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 회사 정관.

二. 주주 명단.

三. 기발행 주식 총수.

四.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주식대금을 상쇄한 경우 그 성명 및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또는 가격 추정의 기준 및 회사가 심사 발급한 주식수.

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립 비용 및 발기인이 얻을 수 있는 보수.

六. 특별주를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의 총수.

七. 이사, 감찰인의 명단과 주소 또는 거주지, 국민신분증 통일 번호 또는 그 밖의 정부의 비준을거친 신분증 증명 문건 번호의 명기.

발기인은 전항의 보고에 허위 정황이 있을 시 각각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 창립회는 이사, 감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 감찰인은 선임된 후 즉시 전 조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히 조사를 실시하고 창립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 감찰인이 발기인으로(에 의하여?@) 당선되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전항의 조사를위하여 창립회가 별도로 조사인을 선

임할 수 있다.

전 두 항이 규정하는 조사에 사칭 또는 허위가 있는 경우 창립회가 감원한다.

발기인은 조사 방해 행위가 있거나 이사, 감찰인, 조사인의 보고에 허위가 있는 경우 각각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1항, 제2항의 조사 보고서는 이사, 감찰인 또는 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 창립회는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기 또는 계속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7조 발기인이 얻을 수 있는 보수 또는 특별 이익 및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립 비용을 冒濫@한 경우 창립회는 모두 감원하고 주식대금에 상쇄한 재산의 추정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창립회는 지급한 주식 수를 감소하거나 보충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8조 구매하지 않은 제1항의 발행 주식 및 이미 구매하였으나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발기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구매하고 철회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149조 제147조 및 제148조의 정황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있을 시 발기인에게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50조 회사를 설립할 수 없을 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 및 설립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冒濫으로 인하여 감원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151조 창립회는 정관을 수정하거나 회사가 하지 아니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77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정관의 수정에 준용한다. 제316조의 규정은 전항의 회사가 하지 아니하는 의결에 준용한다.

제152조 최초로 발행한 주식을 모집한 후 3개월이 초과하여도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미 납부하였으나 발기인이 2개월 이내에 창립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청약인은 그가 청약한 주식을 철회할 수 있다.

제153조 창립회의 종료 후 주식청약인은 주식을 철회할 수 없다.

제154조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납부한 주식대금에 한한다.

제155조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사항에 대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시 회사에 대하여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가 설립등기하기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역시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절 주식

제156조 주식유한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1주당 금액은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일부분은 특별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 종류는 정관이 정한다.

전항 주식의 총수는 회차로 나누어 발행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권관리기관에 공개발행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영사업의 공개발행은 같은 공영사업의 주관기관이 안건으로 심사하여 정하여야 한다.

주주의 출자는 현금 이외에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화폐채권 또는 회사에 필요한 기술, 상업신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 충당 액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하여야 하며 제27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회사 설립 후 발행한 새 주식은 타회사 주식 양도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3분의 2 이상 이사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고 제269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회사 설립 후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정상 운영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전문적인 안건으로 입안하여 심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필요할 시 새 주식을 발행하여 정부에게 양도하여 정부 재무 상 협조한 대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발행절차는 이 법의 새 주식 발행과 관련한 유관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관련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프로젝트가 신대만폐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주관기관이 관련 회사와 회동하여 입법원에 자구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회차에 발행한 주식이 그 발행조건과 상동한 경우 가격은 일률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관리기구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57조 회사가 특별주를 발행할 시 다음 각 관의 사항을 정관 중에 규정하여야 한다.

一. 특별주의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 방출 순서, 정액 또는 정해진 비율.

二. 특별주의 분배회사의 잔여재산의 순서, 정액 또는 정해진 비율.

三. 특별주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순서, 제한 또는 의결권 없음.

四. 특별주의 권리, 의무의 기타 사항.

제158조 회사가 발행한 특별주는 이윤 또는 새 주식을 발행하여 얻은 소득의 주식대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주 주주가 정관에 따라 향유하여야 하는 권리를 손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9조 회사가 특별주를 이미 발행한 경우 그 정관의 변경이 특별주 주주의 권리를 손해할 시 기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주주가 출석하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 경우 이외에도 특별주 주주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출석 이사의 주식 총수가 전항의 정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며 아울러 특별주 주주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 두 항의 출석 이사의 주식 총수 및 의결권 수에 대하여 정관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특별주 주주회는 주주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 여러 명이 주식을 공유한 경우 그 공유인들은 1인을 추천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주식공유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대금 납입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161조 회사는 설립등기 또는 새주식을 발행하여 등기를 변경한 후 주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관리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은 무효하다. 다만 소유인은 주식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1-1조 회사의 자본액이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 액수 이상에 달하는 경우 설립등기 후 또는 새 주식을 발행하여 변경등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일정 액수 이상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것

을 제외하고 주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이 기한부 발행을 명령하는 것 이외에도 각각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 기한부 발행을 명령하며 회수에 따라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까지 연속으로 부과한다.

제162조 주식번호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사 3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관기관 또는 심사결정하는 등기발행기관이 서명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명칭.

二. 등기를 설립하거나 새 주식을 발행하여 등기를 변경한 연, 월, 일.

三. 발행 주식의 총 수 및 1주당 금액.

四. 본 회차에 발행한 주식 수.

五. 발기인의 주식에는 발기인 주식이라는 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六. 특별주는 그 특별주 종류의 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七. 주식을 발행한 연, 월, 일.

기명 주식은 주주의 성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소유한 경우 동일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이 정부 또는 법인 소유인 경우

정부 또는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표인의 성명만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주식의 서명 규칙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관리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2-1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할 시 그 주식은 같은 회사의 발행 총수를 합하여 인쇄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주식은 증권집중보관사업기구(證券集中保管事業機構)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 주식을 발행할 시 전 조 제1항의 주식 번호 및 제164조의 이서 양도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2-2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발행 주식은 주식의 인쇄제작을 면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주식은 증권집중보관사업기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3조 회사주식의 양도는 정관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 설립등기 후가 아닌 경우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기인의 주식은 회사 설립등기 후가 아닌 경우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한 후 신설회사의 발기인의 주식은 양도할 수 있다.

제164조 기명주식은 주식소유인이 이서하여 양도하고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주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무기명 주식은 교부로써 양도할 수 있다.

제165조 주식의 양도는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거주지 또는 주소를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양도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주주상임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주주 임시회 개회 전 15일 이내에 또는 회사의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 분배 결정 또는 기타 이익의 기준일 전 5일 이내에 전항의 주주명부에 기재한 변경사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가 제1항의 주주명부 기재 사항의 변경의 처리는 주주상임회의 개회 60일 이전에 주주임시회의 개회 30일 이전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두항의 기한은 개회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66조 회사는 정관 규정으로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식수는 기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주주의 요청으로 무기명 주식을 발급하거나 무기명 주식을 기명 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67조 회사는 제158조, 제167조 1, 제186조 및 제31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주식을 회수, 수매하거나 질물로 수수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주주가 청산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시장가격에 따라 그 주식을 회수하고 청산 또는 파산 선고 전 회사가 연체한 채무를 충당할 수 있다.

회사는 전항의 단서,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거나 수매한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하고 기한이 만료되어도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등기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기발행 주식의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본 총액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소속회사는 통제회사의 주식을 수매하거나 질물로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통제회사 및 그 소속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회사의 의결권을 소유한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 총액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타회사 역시 통제회사 및 그 소속회사의 주식을 수매하거나 질물로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책임자가 전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회수, 수매 또는 질물로 수수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채무를 충당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7-1조 회사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여 같은 회사의 기발행 주식총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수매할 수 있다. 수매한 주식의 총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이윤에 이미 실현된 자본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회사가 수매한 주식은 3년 이내에 직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하여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매한 주식은 주주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제167-2조 회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여 직원과 주식청약권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일정 기한 이내에 직원은 약정된 가격에 따라 특정 수량의 회사주식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인수한 후 회사가 직원에게 주식청약 증빙을 발급한다.

직원이 취득한 주식청약증빙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승계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회사는 주주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을 감소하지 아니하고 그 주식을 판매할 수 없다. 자본의 감소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감소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1조 회사는 손실의 충당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재무재표 및 손실충당 안건을 이사회 개회 30일 이전에 감찰인에 교부하여 심사하게 한 후 주주회의 의결을 제청하여야 한다.

제229조에서 제231조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임시회 회의에 제청할 시 준용한다.

제169조 주주명부는 번호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각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주지.

二. 각 주주의 주식 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 번호.

三. 주식을 발행한 연, 월, 일.

四.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수, 번호 및 발행한 연, 월, 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五. 특별주를 발행한 경우 특별주의 종류에 관한 문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기기로 처리한 경우 전항의 자료는 표를 첨부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의 성명장부를 본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서비스 대리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비치를

거부하는 경우 회수에 따라 연속으로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절 주주회

제170조 주주회는 다음의 두 종류로 나뉜다.

一. 주주상임회, 매년 최소 1회 소집한다.

二. 주주임시회, 필요시 소집한다.

전항의 주주상임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항의 소집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 주주회는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소집한다.

제172조 주주상임회의 소집은 2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임시회의 소집은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고 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1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주주상임회의 소집은 30일 이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고 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45일 이전

에 공지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주주임시회의 소집은 15일 이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하고 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통지 및 공고사항은 소집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통지에 있어 상대인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자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선임 또는 해임된 이사, 감찰인, 정관 변경, 회사 해산, 합병, 분할 또는 제185조 제1항 각 관의 사항은 소집 사유 중 열거하고 임시동의로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기한에 관한 유관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1조 기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에 주주상임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1건으로 제한하며 제한이 1건을 초과한 경우 모두 의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주주상임회를 소집하기 전 주식초과를 정지하기 전에 수리한 주주의 제안, 수리장소 및 수리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리기한은 10일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주주가 제출한 의안은 삼백자에 한하며 삼백자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제안은 의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안한 주주는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주주상임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아울러 같은 의안

의 토론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주가 제기한 안건은 이사회가 의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一. 같은 의안이 주주회가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닌 경우.

二. 제안한 주주가 회사의 제16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식초과 정지일에 소유한 주식이 1%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三. 같은 의안을 공고한 수리기한 외에 제출한 경우.

회사는 주주회 소집통지일 이전에 처리결과를 제안한 주주에게 통지하고 이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의안을 개회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의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주주의 제안에 대하여 이사회는 주주회에서 포함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 계속하여 1년 이상 기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서면으로 제안사항 및 이유를 설명하고 이사회가 주주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요청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할 시 주주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자체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한 주주임시회는 회사 업무 및 재무상

황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가 주식양도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사회가 주주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집할 수 없을 시 기발행 주식 총수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자체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4조 주주회의 의결은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발행 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5조 출석 이사가 전 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하고 기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을 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가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의결의 내용을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 1개월 이내에 재차 주주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의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주주회는 가의결에 대하여 만약 기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경우 전조의 의결로 본다.

제176조 무기명 주식의 주주는 주주회 개회 5일 이전에 그 주식을 회사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출석할 수 없다.

제177조 주주는 매 회 주주회에 있어 회사가 발행한 위탁서를 제출하고 수권

범위를 명기하고 대리인에 위탁하여 주주회에 출석할 수 있다.

신탁사업 또는 증권주관기관의 지분을 거친 주주대리기구를 제외하고 1인이 동시에 2인 이상 주주의 위탁을 수용하였을 시 그가 대표하는 표결권은 기발행 주식 총수 의결권의 3%를 초과하려서는 아니 되며, 초과하였을 시 그 초과한 표결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1인의 주주는 1건의 위탁서를 제출하고 1인에게 위탁하도록 제한하며 주주회 개회 5일 이전에 회사에 송달하고 위탁서가 중복되었을 시 가장 먼저 송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 위탁을 취소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위탁서를 회사에 송달한 후 주주가 스스로 주주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회 개회 1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위탁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한 대리인이 출석하여 행사한 표결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177-1조 회사가 주주회를 개최할 시 서면 또는 전자의 방식으로 그 표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표결권을 행사할 시 그 행사방법은 주주회 소집 통지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전항의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스스로 주주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회차의 주주회의 임시동의 및 원 의결안의 수정에 대하여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177-2조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주주회 개회 5일 이전에 회사에 송달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에 중복이 있을 시 가장 먼저 송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 의사표시의 취소를 성명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표결권을 행사한 수 스스로 주주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회 개회 1일 이전까지 표결권 행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항의 의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취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위탁서로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주주회에 출석하도록 한 경우 위탁한 대리인이 출석하여 행사한 표결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177-3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주주회 소집은 주주회 의사수첩을 제작하고 주주회 개회 이전에 의사수첩 및 기타 의안과 관련된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공고 시간, 방식, 의사수첩에 명기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 및 기타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방법은 증권관리기관이 정한다.

제178조 주주의 회의에 대한 사항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조성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회사를 대리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9조 회사의 각 주주는 제157조 제3항의 정황을 제외하고 매 주식이 모

두 표결권이 있다.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주식은 표결권이 없다.

一. 회사가 법에 따라 자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二.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소속회사가 통제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三. 통제회사 및 그 소속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 총액의 합계가 과반수를 초과는 타회사가 통제회사 및 그 소속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80조 주주회의 의결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주의 주식수는 기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주회의 의결이 제178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식수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1조 정부 또는 법인이 주주일 시 그 대표인은 1인에 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의결권의 행사는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전항의 대표인이 2인 이상일 시 그 대표인은 공동으로 표결권을 행사한다.

제182조 주주회의 5일 이내에 집회의 연기 또는 계속에 대한 의결은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2-1조 이사회가 주주회를 소집한 경우 그 주석은 제20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사회 이외의 기타 소집권자가 소집한 경우 주석은 같은 소집권자가 담임하여야 하며 소집권자가 2인 이상일 시 서로 1인을 추천하여 담임하여야 한다.

회사는 의사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주주회 개회 시 주석이 의사규칙을 위반하고 회의의 해산을 선포한 경우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로 1인을 추천하여 주석을 담임하게 하고 개회를 지속할 수 있다.

제183조 주주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석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회의 후 20일 이내에 의사록은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전항의 의사록의 제작 및 발송은 전자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는 1천 주에 달하지 아니하는 기명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제1항의 의사록의 발송에 있어 공고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연, 월, 일, 장소, 주석의 성명, 의결 방식, 의사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사의 존속 기간 동안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출석주주의 서명부 및 대리 출석한 위탁서의 보존기한은 최소 1년이다. 다만 주주가 제18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종료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제1항, 제4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4조 주주회는 이사회가 작성한 장부, 감찰인의 보고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윤 분배 또는 손실 충당을 의결할 수 있다.

전항의 조사를 실시할 시 주주회는 조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조사에 대하여 방해, 거절 또는 회피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5조 회사의 다음 행위는 기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한 주주회가 출석 주주 표결권의 과반수 동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一. 전체 영업의 임대에 관하여 위탁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 계약서를 체결, 변경 또는 중지하는 경우

二.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영업 또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三. 타인의 전체 영업 또는 재산을 수양하여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가 전 항의 일정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 및 의결권 수에 대해 정관에 비

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항의 행위의 요령주주는 제172조가 규정하는 통지 및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안은 3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하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제출한다.

제186조 주주가 주주회에서 전 조의 의결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 같은 항목의 행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회가 이미 반대한 경우 회사가 당시의 공평한 가격으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을 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주회가 전 조 제1항 제2관의 의결을 하고 동시에 해산을 의결할 시에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87조 전 조의 청구는 제185조의 의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 종류 및 액수를 명기한 서면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 간에 주식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회사는 의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제185조의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협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는 이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법원이 재정한 가격에 대하여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주식대금에 대한 지급은 주식의 교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주식의 이전은 대금 지급 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88조 제186조 주주의 청구는 회사가 제185조 제1항에 열거한 행위를 취소하였을 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주가 전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목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시 역시 동일하다.

제189조 주주회의 소집 절차 또는 그 의결방법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시 주주는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의결의 취소에 대한 소를 제청할 수 있다.

제189-1조 법원은 전 조의 의결 취소에 대한 소가 위반한 사실이 중대하지 아니하고 의결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시 그 제청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 의결사항을 이미 등기한 경우 법원이 의결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관기관은 법원의 통지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91조 주주회가 의결한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제4절 이사 및 이사회

제192조 회사의 이사회에는 설치된 이사가 3인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주주회가 행위능력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가 전항에 따라 선임한 이사의 전체 이사의 지분 합계 비율은 증권관리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85조의 규정은 전항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와 이사간의 관계는 이 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의 규정은 이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2-1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이사 선거에 있어 후보인추천제도(候選人提名制度)를 채택한 경우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주주는 이사 후보인 명단 중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회를 개최하기 전의 주식초과 정지일 전에 이사 후보인 추천 수리기간, 이사 선거인수, 접수 장소 및 그 밖의 필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접수 기간은 10일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기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서면으로 회사에 이사 후보인 명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인수는 이사의 선거인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인의 인원수 역시 동일하다.

전항의 추천 주주는 피추천인의 성명, 학력, 경력, 당선 후 원임이사(愿任) 주주의 승락서, 제30조가 규정하는 정황이 없음을 증명하

는 성명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추천인이 법인 주주 또는 그 대표인인 경우 아울러 같은 법인의 주주 등기에 관한 기본 자료 및 소유 주식 수를 등기한 증명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회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가 주주회를 소집한 경우 이사의 피추천인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후보인 명단에 포함하여야 한다.

一. 추천 주주가 접수 공고기간 이외에 제출한 경우.

二. 추천 주주가 회사가 제16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식 초과를 정지할 시 소유지분이 1%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三. 추천인원수가 이사 선거인원수를 초과한 경우.

四. 제4항이 규정하는 관련 증명문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심사는 이사의 피추천인의 작업 과정을 심사하고 기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보존기한은 최소 1년이다. 다만 주주가 이사의 선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종결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상임회 개회 40일 이전 또는 주주임시회 개회 25일 이전에 이사후보인 명단 및 그 학력, 경력, 소유 주식 수와 대표하고 있는 정부, 법인 명칭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공고하고 아울러 심사결과를 추천 주주에 통지하여 추천인선에 대하여 이사 후보인

의 명단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제2항 또는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3조 이사회의 업무 집행은 법령정관 및 주주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할 시 의결에 참여한 이사는 회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이사는 기록이 있거나 서면으로 증명이 가능함을 성명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194조 이사회 의결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시 계속 1년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사회에 그 행위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5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그 직무 집행을 개선 이사의 취임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이 직권에 따라 회사의 개선을 기한부로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여전히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이 만료될 시 당연히 해임되어야 한다.

제196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회가 결정하여야

하며 사후에 추인할 수 없다.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이사에 준용한다.

제197조 이사는 선임된 후 주관기관에 선임 당시 소유한 회사 주식 수를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이사는 임기 도중 선임 당시 소유한 회사 주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양도하였을 시 그 이사는 당연히 해임되어야 한다.

이사는 임기 중 그 주식을 증감할 시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개선을 실시한 경우 당선된 이사가 취임 전 선임 당시 소유한 회사 주식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양도하거나 주주회 개회 전 주식초과 정지기간 내에 소유 주식을 2분의 1 이상 초과하여 양도하였을 시 그 당선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97-1조 이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해제한 후 15일 이내에 그 질권 변동 상황을 주관기관에 신고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에 있어 증권관리기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98조 주주회가 이사를 선임할 시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주당 선출할 수 있는 이사 인원수와 상동하는 선거권이 있으며 집중하여 1인을 선거하거나 분배하여 수인을 선거할 수 있

으며 표를 많이 획득한 자가 이사로 당선된다.

제178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거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9조 이사는 주주회의 결의로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만약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 이사는 회사에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주회의 전항의 해임에 대한 의결은 기발행 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수 있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로 실시한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가 전항의 일정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 및 의결권 수에 대해 정관에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99-1조 주주회가 이사 임기가 만료하기 이전에 의결에 따라 전체 이사를 개선한 경우 만약 의결하지 아니한 이사는 임기 만료 시 해임되며 사전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00조 이사의 업무 집행에 회사에 손해를 조성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가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중대 사항이 있음에도 주주회사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없을 시 기발행 주식 총수 3% 이상을 소유하

고 있는 주주가 이사회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1조 이사의 결권이 3분의 1에 달하였을 시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주주임시회를 개최하여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주주임시회를 개최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제202조 회사업무의 집행에 있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주주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의 의결로 실시한다.

제203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매 임기주주의 최초의 이사회는 대표선거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이사가 소집한다.

매 임기 최초의 이사회는 개선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상기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개선하고 임기 만료 시에 해임을 의결한 경우주주 상기 이사의 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가 상기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 개선하고 아울러 임기 만료 시 해임을 의결한 경우 그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개선은 임기 만료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최초의 이사회 소집은 출석한 이사가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을 선거할 수 있는 최다 출석인원수에 달하지 아니할 시 원 소집인은 15일 이내에 계속 소집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206조의 의결방법을 적용하여 선거할 수 있다.

대표선거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이사가 제2항 또는 전항의 기한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시 5분의 1 이상의 당선 이사가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자체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4조 이사회의 소집은 그 사유를 명기하고 7일 이전에 각 이사 및 감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정황이 있을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05조 이사회 개회 시 이사는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정관에 그 밖의 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사회 개회 시 만약 화상회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그 이사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가 그 밖의 이사에 위탁하여 이사회에 대리출석한 경우 매회 위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집 사유에 대한 수권범위를 열거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리인은 1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사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서면으로 국내의 그 밖의 주주에게 일상적으로 이사회의에 대리출석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전항의 대리는 주관기관에 등기하여야 하며 변경 시 역시 동일하다.

제206조 이사회의 의결에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반수 이사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8조, 제180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의결에 준용한다.

제207조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의사록은 제183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08조 이사회가 상임이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3분의 2 이상의 의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서로 1인을 이사장을 추천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 1인을 부이사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사회가 상임이사를 설치한 경우 그 상임이사는 전항의 선거 방식에 따라 선거하고 인원수는 최소 3인이며 최대 이사 인원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은 상임이사가 전항의 선거방식에 따라 선거한다.

이사장은 대내적으로 주주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주석을 담임하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장이 휴가를 신청하거나 유고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을 시 부이사장이 대리한다. 부이사장이 없거나 부이사장 역시 휴가를 신청하거나 유고로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시 이사장이 상임이사 중 1인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한다. 상임 이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1인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한다. 이사장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상호 1인을 추천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상임이사가 이사회 휴회 시 법령, 정관, 주주회 의결 및 이사회 의

결에 따라 집회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직권을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반수 이상의 상임이사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진행한다.

제57조 및 제58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에 준용한다.

제208-1조 이사회가 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사할 수 없어 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1인 이상의 임시 관리인을 선임하여 이사장 및 이사회의 직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회사에 불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임시 관리인은 법원이 주관기관의 등기를 위탁하여야 한다.

임시 관리인의 해임 시 법원은 주관기관에 그 등기의 말소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209조 이사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주주회에 그 행위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주회의 전항의 허가에 대한 의결은 기발행 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이사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가 전항의 일정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

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 및 의결권 수에 대해 정관에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하였을 시 주주회는 의결로서 같은 행위의 소득을 회사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10조 증권관리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정관 및 매 임기의 주주회의 의사록, 재무재표를 본사에 비치하고 주주명부 및 회사채권 명부를 본사 또는 서비스 대리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정관 및 장부는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가 이해관계 증명문건을 첨부하고 지정된 범위 내에서 수시로 조사 열람하거나 필사할 수 있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열람 또는 필사를 거절하는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한다.

제211조 회사의 손실이 실제 납입 자본의 2분의 1에 달하였을 시 이사회는 즉시 주주회를 소집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자신이 그 채무를 충당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 제282조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즉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2조 주주회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할 시 회사는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13조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찰인이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회 역시 별도로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14조 계속하여 1년 이상 기발행 주식 총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서면으로 감찰인이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감찰인은 전항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항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시 법원은 피고의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한 주주에게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만약 패소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소를 제기한 주주는 회사의 배상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215조 전조 제2항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실이 현저한 허

구에 속하고 판결을 거쳐 확정될 시 그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피소된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전조 제2항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사실이 현저히 사실에 속하고 판결을 거쳐 확정될 시 피소한 이사는 소를 제기한 주주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절 감찰인

제216조 회사의 감찰인은 주주회가 선임하며 감찰인 중 최소 1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가 전항에 따라 선임하는 감찰인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전체 감찰인의 지분 합계 비율은 증권관리기관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사와 감찰인 간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의 규정 및 제192조 제1항, 제3항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감찰인에게 준용한다.

제216-1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감찰인 선거에 있어 정관 규정에 따라 후보인추천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제192조 1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7조 감찰인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선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찰인이 임기가 만료되어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감찰인을 개선하여 취임할 때까지 연장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직권에 따라 회사에 기한내에 개선을 실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 만료 시점부터 당연히 해임하여야 한다.

제217-1조 감찰인 전체가 모두 해임되었을 시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주주임시회를 소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주주임시회를 소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218조 감찰인은 회사 업무의 집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수시로 회사 업무 및 재무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와 문건을 조사 대조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사회 또는 경영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감찰인은 전항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하여 변호사, 회계사에게 그 심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감찰인의 조사 행위를 방해, 거절 또는 회피하는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8-1조 이사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면 즉시 감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8-2조 감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 또는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정관 또는 주주회의결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감찰인은 이사회 또는 이사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9조 감찰인은 이사회가 주주회에 제출한 각종 문건에 대하여 대조 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찰인은 전항의 사무를 회계사에 위탁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감찰인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각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0조 감찰인은 이사회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1조 감찰인은 각각 단독으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2조 감찰인은 회사의 이사, 경리인 또는 기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223조 이사는 자신 또는 타인과 회사를 위하여 매매, 대차 또는 그 밖의 법률행위를 할 시 감찰인이 회사의 대표가 된다.

제224조 감찰인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225조 이사회가 감찰인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의결한 경우 회사는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소송 대표는 주주회가 이사 외에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제226조 감찰인이 회사 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사 역

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같은 감찰인 및 이사는 연대 채무인이 된다.

제227조 제196조에서 200조, 제208조 1, 제214조 및 제215조의 규정은 감찰인에 준용한다. 다만 제214조의 감찰인에 대한 청구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회계

제228조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이사회는 다음의 문건을 작성하여 주주상임회의 개회 30일 전에 감찰인에게 교부하여 조사 대조하여야 한다.

一. 영업보고서.

二. 재무보고서.

三. 이윤 분배 또는 손실 충당의 의안.

전항의 문건은 중앙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규장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문건은 감찰인이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조사 대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9조 이사회가 작성한 각종 문건과 감찰인의 보고서는 주주상임회 개회 10일 전에 본사에 비치하고 주주는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위탁한 변호사 또는 회계사가 열람할 수 있다.

제230조 이사회는 작성한 각종 문건을 주주상임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

고 주주상임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재무보고표 및 이윤분배와 손실충당에 관한 의결을 각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가 1천주가 되지 아니하는 기명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전항의 재무보고표 및 이윤분배 또는 손실충당에 관한 의견의 발송을 공고의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문건 및 의결은 회사채권자가 발부 또는 필사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 각종 문건은 주주회의 승인을 거치고 나면 회사가 이미 이사 및 감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사 또는 감찰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32조 회사가 손실을 충당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이윤적립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이윤이 없을 시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정이윤적립금이 이미 실제 자본액의 5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으로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를 분배할 수 있다.

회사책임자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를 분배한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

거나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제233조 회사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를 분배 시 회사의 채권자는 반환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4조 회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허가를 거쳐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영업 개시 전에 주식이자를 분배할 수 있다.

전항의 주식 이자 분배 금액은 사전 지급한 주식 이자를 자산부채표에 포함된 주주 권익 항목에 포함하고 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후 회사 매 회기 주식 이자 및 인센티브를 분배함에 있어 실제 자본액수의 6%를 초과할 시 그 초과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235조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의 분배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정관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분배하는 비율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 사업의 중앙 주관기관이 전문적인 안건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송영사업은 같은 공영사업의 주관기관이 결정하고 정관이 직원의 인센티브 분배 이율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관은 직원의 주식 인센티브 분배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소속 회사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236조 (삭제)

제237조 회사는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 이윤 분배 시 10%를 법정이윤적립금으로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이윤적립금이 이미 자본 총액에 달하였을 시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법정이윤적립금 이외에도 회사는 정관에 약정하거나 주주회의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이윤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회사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이윤적립금을 인출하지 아니할 시 각각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238조 (삭제)

제239조 법정이윤적립 및 자본적립금은 회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41조가 규정하는 정황 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이윤적립금으로 자본 손실을 보충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할 시 자본적립금으로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 회사는 기발행 주식 총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는 주주회에서 출석 이사의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로 분배하여야 하는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신주를 발행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1주에 달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분

배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출석 이사의 주식 총수가 전항의 일정액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 및 의결권 수에 대하여 정관에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 3 항의 의결에 따라 인센티브를 자본으로 전환하였을 시 정관의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는 인센티브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 조에서 발행한 신주는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가 증권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한 주주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사회는 즉시 각각 주주 또는 주주명단에 기재된 질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공지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의 분배에 있어 정관에 그 일정액 또는 비율을 기재하고 이사회에 수권하여 처리하도록 한 경우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주주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는 주식이자 및 인센티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분배하고 주주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1조 회사가 손해가 없는 경우 전 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회의 의결 방식으로 법정이윤적립금 및 다음의 자본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자본으로 할당하여 주주의 원 소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분배하여야 한다.

一.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얻은 금액.

二. 증여를 수령한 소득.

전 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은 전 항에 준용한다.

법정이윤적립금으로 자본을 충당한 경우 같은 항목의 적립금이 이미 실제 납입 자본의 50%에 달한 경우 그 반수를 충당하는 것에 한한다.

제242조 (삭제)

제243조 (삭제)

제244조 (삭제)

제245조 계속 1년 이상 기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법원에 조사인을 파견하여 회사의 업무 항목 및 재산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인의 보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찰인에게 주주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조사인의 조사에 대하여 방해, 거절 또는 회피 행위를 하거나 감찰

인이 법원의 명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주주회를 소집한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절 회사채

제246조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회사채를 모집하는 원인 및 관련 사항을 주주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6-1조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시 그 변제순위는 회사의 그 밖에 채권 다음이어야 한다.

제247조 회사채의 총액은 회사의 현재 전부 자산을 초과하여 전체 부채 및 무형 자산의 잔여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담보 회사채의 총액은 전항의 잔여액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8조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시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고 증권관리기관에 처리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명칭.

二. 회사채의 총액 및 채권 장당의 금액.

三. 회사채의 이율.

四. 회사채 상환 방식 및 기한.

五. 회사채권을 상환하는 모집 계획 및 보관방법.

六. 회사채 모집 대금의 용도 및 운용 계획.

七. 전에 이미 회사채를 모집한 경우 상환하지 아니한 액수.

八. 회사채가 발행하는 가격 또는 최저 가격.

九. 회사주식 총액와 기발행 주식 총수 및 그 금액.

一0. 회사의 기존의 전부 자산에서 전부 부채 및 무형 자산을 감한 후의 잔여액.

一一. 증권관리기관이 규정하는 재무재표.

一二. 회사채권인의 수탁인 명칭 및 그 약정 사항.

一三. 대금을 대리 수수한 은행 또는 우체국의 명칭 및 주소.

一四. 판매 또는 대리기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약정 사항.

一五. 발행담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증명 문건.

一六. 발행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증명 문건.

一七. 전에 이미 발행한 회사채 또는 그 밖의 채무에 대하여 위약한 적이 있거나 이자 지급을 연기한 사실 또는 현황이 있는 경우.

一八. 전환가능주식의 경우, 그 전환방법.

一九. 이표워런트(coupon warrant)인 경우 그 구매방법.

二0. 이사회의 의사록.

二一. 회사채의 기타 발행 사항 또는 증권관리기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사항.

회사채의 사채모집은 제249조 제2관 및 제250조 제2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발행 후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증권관리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모 발행한 회사는 상장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사모인수는 35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구가 모집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제1항 각 관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증권관리기관에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시정하지 아니할 시 증권관리기관이 각각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7관, 제9관에서 제11관, 제17관까지 회사 발행 신청 시 약정하고 그 보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 제12관의 수탁인은 금융 또는 신탁사업에 한하며 회사가 발생 신청 시 약정하고 그 보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부터

제1항 제18관의 전환가능한 주식 또는 제19관의 인수가능 총액에 기발행 주식 총수, 기발행 전환 회사채 전환가능주식 총수, 기발행 주식청약권 회사채의 청약가능주식총수, 기발행 주식청약권 특별주의 청약가능주식총수 및 기발행청약권 증빙 청약가능주식총수가 회사정관이 규정하는 주식총수를 초과할 시 정관을 변경하여 자본을

증자한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제249조 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무담보 회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一. 기발행한 회사채 또는 그 밖의 채무에 대하여 위약한 적이 있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이미 종료된 경우.

二. 최근 3년 또는 개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개업연도의 과세 후의 평균 순익이 원래 발행한 회사채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연 이자 총액의 150%인 경우.

제250조 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전에 이미 발행한 회사차 또는 그 밖의 채무에 대하여 위약한 적이 있거나 이자 지급을 연기한 사실이 있고 계속 진행 중인 경우.

二. 최근 3년 또는 개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개업연도의 과세 후의 평균 순익이 원래 발행한 회사채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연 이자 총액의 100%인 경우. 다만 은행의 보증을 거쳐 발행한 회사채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1조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비준을 거쳐 그 신청 사실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정황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시 증권관리기관은 비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비준을 취소할 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모집을 중지한다. 이미 발행한 경우 즉시 상환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책임자는 회사 및 모집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3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조 제1항에 준용한다.

제252조 회사의 회사채 발행의 신청은 비준을 거친 후 이사회가 비준통지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채 응모서에 대하여 제248조 제1항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고 비준한 증권관리기관과 연, 월, 일, 번호를 첨부하고 동시에 그 공고로 모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8조 제1항 제11관의 재무재표, 제12관 및 제14관의 약정 사항, 제15관 및 제16관의 증명 문건, 제20관의 의사록 등 사항은 공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기한을 초과하여도 모집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모집이 필요한 경우 재차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응모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관리기관이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3조 응모인은 응모서 상에 금액 및 그 주소 또는 거주지를 명기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작성한 응모서에 따라 납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응모인이 현금으로 현장에서 무기명 주식 채권을 구입한 경우 전항의 응모서의 작성을 면제한다.

제254조 회사채는 응모인의 인정하면 이사회가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각 응모인에게 구매한 금액의 납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55조 이사회는 전 조의 청구를 실시하기 전에 전체 기명채권 응모인의 성명, 주소 또는 거주지, 구매 금액 및 기발행한 무기명 채권 장수, 번호 및 금액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제248조 제1항 각관이 규정하는 문건과 함께 회사채권인의 수탁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수탁인은 응모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제256조 회사가 회사채의 발행을 위하여 설정한 압류권 또는 질권은 수탁인인 채권인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채의 발행 전에 우선 설정할 수 있다.

수탁인은 전항의 압류권 또는 질권 또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실행하거나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제257조 회사채의 채권 일련번호에 발행한 연, 월, 일 및 제248조 제1항 제1관에서 제4관, 제18관 및 제19관의 사항을 명기하고 담보, 전환 또는 인수 가능한 주식이 있는 경우 담보, 전환 또는 인수 가능이라는 글자를 명기하고 3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권관리기관 또는 그가 조사하는 발행등기기구가 서명하고 발행한다.

담보가 있는 회사채는 전항의 필수 사항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회사채의 정면에 보증인의 명칭을 예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57-1조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시 그 채권은 같은 회차에 발행한 총액과 합산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는 증권집중보관사업기구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채를 발행할 시 제248조 제1항 제2항, 제257조, 제258조 및 제60조의 채권의 장당 금액, 일련번호 및 이서양도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7-2조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채권의 인쇄를 면하며 증권집중보관사업기구에 적절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258조 회사채 부본은 소유 채권의 일련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다음의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一. 회사채 채권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주지.

二. 제248조 제1항 제2관에서 제4관의 사항, 제12관 수탁인의 명칭, 제15관, 제16관의 발행담보 및 보증, 제18관의 전환 및 제19관의 인수가능에 관련된 사항.

三. 회사채를 발행한 연, 월, 일.

四. 각 채권 소유인이 취득한 채권의 연, 월, 일.

무기명 채권은 무기명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전항 제1관의 기재사항을 대체한다.

제259조 회사가 회사채를 모집한 후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용한 경우 회사책임자를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만약 회사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260조 기명식의 회사채권은 소유인이 배서로써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양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채권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양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주지를 회사채의 부본에 기재하고 그 양도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제261조 채권이 무기명식인 경우 채권인은 수시로 기명식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다.

제262조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회사는 그 전환방법에 따라 주식을 발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회사채 채권인은 선택권을 향유한다.

회사채에 주권이 부가된 경우 회사는 그 인수방법에 따라 주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주식청약권의 증빙 소유인이 선택권을 향유한다.

제263조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회사채 채권인의 수탁인 또는 같은 회차의

회사채 총수의 5% 이상의 회사채 채권을 소유한 자는 회사채 채권자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위하여 같은 회차의 회사채 채권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항 회의의 의결은 회사채 채권 총수 4분의 3 이상을 대표하는 채권인의 출석과 출석 채권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주의 회사채 별 최저 액면 금액 당 하나의 의결권이 있다. 무기명 회사채의 채권인이 제1항 회의에 출석한 경우 주식유한공사의 무기명 주식의 주주의 주주회 출석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제264조 전 조의 채권인 회의의 의결은 의사록으로 작성하고 의장이 서명하여 회사 소재지의 법원의 인가를 신청하고 공고한 후 전체 회사채 채권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회사채 채권인의 수탁인이 집행한다. 다만 회사채 회의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65조 회사채 채권인 회의의 의결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인가하지 아니한다.

一. 회사채 채권인 회의 소집의 수속 또는 그 의결방법이 법령 또는 응모서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二. 의결을 부정당한 방법으로 달성한 경우.

三. 의결이 공정함을 현저히 잃은 경우.

四. 의결이 채권인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반한 경우.

제8절 신주의 발행

제266조 회사가 제156조 제2항에 따라 회차로 나누어 신주를 발행하거나 제278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증자한 후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 모두 이 절의 규정을 따른다.

회사는 신주를 발행할 시 이사회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41조, 제142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267조 회사의 신주 발행 시 목적 사업의 중앙 주관기관의 전문적인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 발행 총수 10%에서 15%를 회사 직원의 구매를 위하여 보류하여야 한다.

공영사업은 같은 공영사업의 주관기관의 전문안건으로 심사를 거친 경우 발행 신주를 직원 구매를 위하여 보류할 수 있다. 그 보류 주식은 발행 신주 총수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신주 발행은 전 두 항의 보류 경우를 제외하고 원 주주에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며 원 주식 비례에 따라 우선 분배하고 기한이 초과하여 인수하지 아니함을 성명하는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한다.

원 주주가 소유한 주식 비율이 신주 1주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하여 공동 구매하거나 1인에게 귀속할 수 있다. 원 주주가 구

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발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전 3 항의 신주구매권리는 직원구매를 위하여 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 주식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직원 구매 보류주식에 관한 규정은 적립금 또는 자산증가분으로 충당하여 원 주주에게 신주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직원이 제1항, 제2항에 따라 구매한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의 규정은 타회사의 합병, 분할,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제167조 2, 제262조, 제268조 1의 제1항에 대하여 신주를 증가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원 주주 및 직원이 전부 인정하거나 특정인이 구매에 협의하여 공개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증권관리기관의 비준을 신청하고 공개발행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명칭.

二. 원 주식 총수, 기발행 액수 및 금액.

三. 발행한 신주 총수, 매 주 금액 및 그 밖의 발행조건.

四. 증권관리기관이 규정하는 재무재표.

五. 증자 계획.

六. 특별주를 발행한 경우 그 종류, 주식 수, 1주당 금액 및 제157조 각 관의 사항.

七. 주식청약권 증빙 또는 주식청약권을 첨부한 특별주를 발행한 경우 그 인수 가능 주식수 및 인수 방법.

八. 주식대금을 대리 수수하는 은행 또는 우체국의 명칭 및 주소.

九. 판매 또는 대리기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약정 사항.

一0. 신주 발행 의결에 관한 의사록.

一一. 증권관리기관이 규정하는 그 밖의 사항.

회사는 전항 각 관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증권관리기관에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시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관리기관이 각각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관에서 제4관 및 제6관은 회계사가 조사하고 서명한다. 제8관, 제9관은 변호사가 조사하고 서명한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있어 제267조 제5항의 발행 신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신주 발행의 주식수, 주식청약권 증빙 또는 주식청약권을

첨부한 특별주의 인수가능 주식 수에 기발행 주식총수, 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총수, 기발행하고 주식청약권을 첨부한 인수가능 주식총수를 합산할 시 우선 정관을 변경하여 자본액수를 증가한 후에야 가능하다.

제268-1조 회사가 주식청약권 증빙 또는 주식청약권을 첨부한 특별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청약 방법에 있어 주식발행에 관한 의무가 있으며 제269조 및 제270조가 규정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청약권 증빙 소유인은 선택권을 향유한다.

제266조 제2항, 제271조 제1항, 제2항, 제272조 및 제27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회사의 주식청약권 증빙 발행 시 준용한다.

제269조 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우선권리를 향유하는 특별주를 공개적으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최근 3년 또는 개업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개업연도의 과세 후의 평균 순익이 기발행 및 발행예정 특별주의 주식이자의 지급에 부족한 경우.

二. 기발행한 특별주에 대하여 주식이자를 약정하였으나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270조 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주를 공개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최근 2년 동안 연속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업의 성

격에 따라 비교적 긴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건전한 영업계획이 필요하고 확실히 영업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二.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271조 회사가 공개 발행한 주식은 비준을 거친 후 만약 그 신청사항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정황이 있음이 발견될 시 증권관리기관은 그 비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전항의 비준 취소에 있어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을 정지한다. 이미 발행한 경우 주식소유인은 취소시점부터 회사에 주식의 원 발행금액에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5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272조 회사가 신주를 공개 발행할 시 주식대금은 현금이어야 한다. 다만 원 주주가 구매를 인정하거나 특정인이 구매에 협의하여 공개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

제273조 회사가 주식을 공개 발행 시 이사회는 주식청약서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 주식청약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 수, 종류, 금액 및 그 주소 또는 거주지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一. 제129조 제2항 제1관에서 제6관 및 제130조의 사항.

二. 원 주식총수 또는 증자한 후 주식 총수 중 기발행한 액수 및 그 금액.

三. 제268조 제1항 제3관에서 제11관의 사항.

四. 주식 대금 납부 일자.

회사가 주식을 공개 발행할 시 전항의 주식청약서에 증권관리기관의 비준번호 및 연, 월, 일을 기재하는 것 이외에도 전항 각 관의 사항을 증권관리기관의 비준을 통과한 후 30일 이내에 비준번호 및 연, 월, 일을 기재하여 공고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보고서, 재산목록, 의사록, 판매 또는 대리기구의 약정 사항은 공고를 면제한다.

전항의 기한을 초과하여도 여전히 공개 발행이 필요한 시 재차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청약인이 현금으로 현장에서 무기명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제1항의 주식청약서의 작성을 면제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청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관리기관이 각각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4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제272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공개 발행하지 아니할 시에도 여전히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청약서

를 비치하여야 한다. 만약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주식대금을 충당하는 경우 아울러 주식청약서에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또는 추정가격의 기준 및 회사가 발급한 주식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산은 출자를 실행한 후 이사회가 감찰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주관기관에 송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5조 (삭제)

제276조 주식 발행에 있어 주식대금 납입 기한을 초과하고도 여전히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수하였으나 취소하였거나 또는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대금을 납부하는 주주는 1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회사가 충분한 액수로 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청약을 철회하고 회사가 그 대금을 반환하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미 이러한 행위가 있는 이사는 전항의 정황이 회사에 조성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9절 정관의 변경

제277조 회사는 주주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전항의 주주회 의결은 기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로 실시한다.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는 출석 주주의 주식총수가 전항의 일정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 및 의결권 수에 대하여 정관에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78조 회사는 이미 규정한 주식총수 전부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자본을 증가할 수 없다.

증자한 후의 주식 총수는 회차로 나누어 발행할 수 있다.

제279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신주를 전환 발행할 시 회사는 감자 등기를 수속한 후 6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각 주주에게 전환 취득할 것을 통지하고 기한이 초과하여도 전환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상실함을 성명하여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기한 내에 전환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상실하며 회사는 그 주식을 경매하여 취득한 금액을 같은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회사책임자가 이 조의 통지 또는 공고 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신대만폐 3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식을 합병할 시 합병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

식의 처리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1조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은 자본의 감소에 준용한다.

제10절 회사의 구조조정

제282조 주식을 공개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공개 발행한 회사가 재무로 인한 곤란으로 영업을 잠정 정지하였으나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 중 1인은 법원에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一. 연속 6개월 이상 기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二. 회사의 기발행 주식 총수 금액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회사채권자.

회사는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3조 회사의 구조조정의 신청은 신청인이 서장으로 부본 5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주지. 신청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 또는 기관인 경우 그 명칭 및 공무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二. 법정대리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명칭, 주소 또는 거주지,

법정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

三. 회사의 명칭,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회사를 대표하는 책임자의 성명, 주소 또는 거주지.

四. 신청 사유 및 사실.

五. 회사가 영업하는 사업 및 업무 상황.

六. 회사의 최근 1년도의 제22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장부. 신청일자가 이미 연도가 시작된 지 6개월을 넘긴 경우, 별도로 전년도의 자산 부채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七.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전항 제5관에서 제7관까지의 사항은 문건을 첨부하여 보충할 수 있다.

회사는 신청 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주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시 그 자격을 명기한 문건과 함께 제1항 제5관 및 제6관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83-1조 구조조정의 신청에 있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각하여야 한다.

一. 신청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다만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二. 회사가 이 법에 따라 주식 또는 회사채를 공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三.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미 확정된 경우.

四. 회사가 파산법(破産法)에 따라 결정한 조정 의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

五. 회사가 이미 해산한 경우.

六.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여 기한부 청산을 하는 경우.

제284조 법원은 구조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전 조의 규정에 따라 기각을 재정하는 것 이외에도 신청 서장 부본을 주관기관, 목적 사업의 중앙주관기관, 중앙 금융주관기관 및 증권관리기관에 송부하고 구조조정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질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조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본사 소재지의 세금 감찰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질의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의견 질의 기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주주 또는 채권인일 시 법원은 신청서 서장 부본을 같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5조 법원은 전 조의 질의 이외에도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경영 경험을 구비하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를 조사인으로 선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선임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一. 회사의 업무, 재무 상황 및 자산 추정 가격.

二. 회사의 업무, 재무, 자산 및 생산 설비의 분석에 따라 구조조정을 거쳐 재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三. 회사의 지금까지의 업무 경영의 득실 및 회사책임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태만하거나 부당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四. 신청 서장에 기재한 사항에 허위의 정황이 있는지 여부.

五.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그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의 타당성.

六. 그 밖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

조사인은 회사의 업무 또는 재무에 관련된 일체의 장부, 문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그 밖의 직원은 조사인의 업무 재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그 밖의 직원이 전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항의 질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1조 법원은 조사인의 보고서에 따라 목적 사업의 중앙 주관기관, 증권관리기관, 중앙 금융주관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조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120일 이내에 구조조정의 허가 또는 기각의 재정을 하고 각 유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120일의 기간은 법원이 재정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매 회

연장은 3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차에 한한다.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조조정 신청의 기각을 재정하여야 한다.

一. 신청 서장에 기재된 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二. 회사의 업무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여도 재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원이 전항 제2관에 따라 기각을 재정할 시 파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286조 법원은 구조조정을 재정하기 이전에 회사책임자에 명령하여 7일 이내에 회사채권인 및 주주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격에 따라 각각 명단을 작성하고 주소 또는 거주지 및 채권 또는 주소의 총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87조 법원은 회사의 구조조정을 재정하기 전에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 관의 처분을 재정할 수 있다.

一. 회사 재산의 보전 처분.

二. 회사 업무의 제한.

三. 회사의 채무 이행 및 회사의 채권 행사에 대한 제한.

四. 회사의 파산, 조정 또는 강제집행 등 절차의 정지.

五. 회사의 기명식 주식 양도의 금지.

六. 회사책임자가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조사 및 그 재산

의 보전 처분.

전항의 처분은 법원이 구조조정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은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요 시 법원은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연장을 재정할 수 있다. 그 연장기간은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구조조정의 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의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이 제1항의 재정을 할 시 그 재정내용을 증권관리기관 및 관련된 목적 사업의 중앙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8조 (삭제)

제289조 법원은 구조조정을 재정할 시 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영 경험을 구비하거나 금융기관을 구조조정 감찰인으로 선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一. 채권 및 주주권의 신고일자 및 장소. 그 기한은 재정일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하이어야 한다.

二. 신고한 채권 및 주주권의 심사일자 및 장소. 그 기한은 전 관의 신고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이어야 한다.

三. 제1항 관계인 회의일자 및 장소. 그 일자는 제1관 신고기한 만료 후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전항의 구조조정 감독인은 법원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하며 법원이

수시로 개선할 수 있다.

구조조정 감독인이 수인일 시 구조조정 사무의 감독집행에 관하여 그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한다.

제290조 회사의 구조조정인은 법원이 채권인, 주주, 이사, 목적 사업의 중앙 주관기관 또는 증권관리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중 선임하여 파견한다.

제30조의 규정은 전항의 회사의 구조조정인에게 준용한다.

관계인 회의는 제302조에 따라 팀으로 나누어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가 2팀 이상 별도의 구조조정인을 선임할 것을 주장할 시 후보인 명단을 제출하여 법원에 선임파견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조정인이 수인일 시 구조조정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그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구조조정인의 직무의 집행은 구조조정 감독인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구조조정 감독인은 법원에 그 직무의 해직을 신청하고 별도로 선임파견할 수 있다.

구조조정인의 다음의 행위는 사전에 구조조정 감독인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一. 영업행위 이외의 회사 재산의 처분.

二. 회사 업무 또는 경영방법의 변경.

三. 대출.

四. 중요하거나 장기적인 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 그 범위는 구조조정 감독인이 정한다.

五. 소송 또는 중재의 진행.

六. 회사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

七. 타인의 취득권, 해제권 또는 충당권을 행사하는 사건의 처리.

八. 회사의 주요 인사의 임면.

九. 그 밖의 법원이 제한하는 행위.

제291조 법원은 구조조정을 재정한 후에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一. 구조조정을 재정한 본문 및 연, 월, 일.

二. 구조조정 감독인, 구조조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처소.

三. 제28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간, 일자 및 장소.

四. 회사채권인 및 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권리 신고에 태만하였을 시 그 법률적 효력.

법원은 구조조정 감독인, 구조조정인, 회사, 이미 알고 있는 회사채권인 및 주주에 대하여 전항의 재정 및 열거한 각 사항을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항의 재정을 회사에 송달할 시 서기관을 파견하여 회사의 장부에 마감의지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요약서를 작성하

고 장부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2조 법원은 구조조정을 재정한 후 재정서를 주관기관에 통지하고 구조조정 개시를 위한 등기를 수속하며 회사가 재정서의 영사본을 같은 회사 소재지의 공고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93조 구조조정의 재정을 회사에 송달한 후 회사 업무의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구조조정인에게 속하며 구조조정 감독인은 인수를 감독하고 법원에 신고하며 회사의 주주회, 이사 및 감찰인의 직권은 정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인수작업 시 회사의 이사 및 경영인은 회사업무 및 재무와 관련된 일체의 장부, 문건과 회사의 일체의 재산을 구조조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그 밖의 직원은 구조조정 감독인 또는 구조조정인이 업무 또는 재무 상황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그 밖의 직원에게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一. 교부의 거절.

二. 회사의 업무 또는 재무 상황과 관련된 장부, 문건의 은닉 또는 훼손.

三. 회사의 재산 또는 그 밖의 채권인에게 불리한 처분의 은닉 또는 훼손.

四. 전항의 질의에 대하여 이유없이 답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五. 채무를 날조하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제294조 구조조정의 재정 후 회사의 파산, 조정, 강제집행 및 재산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되어야 한다.

제295조 법원은 제287조 제1항의 제1, 제2, 제5 및 제6 각 관의 처분에 따라 구조조정의 재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관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재정 후에도 여전히 이해관계인 또는 구조조정 감독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재정할 수 있다.

제296조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구조조정의 재정 전에 성립한 경우 구조조정 채권으로 된다. 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 구조조정 채권이 된다. 압류권, 질권 또는 유치권이 담보인 경우 담보가 있는 구조조정 채권이 된다. 이 항목의 담보가 없는 경우 무담보 구조조정 채권이 된다. 각각의 같은 채권은 구조조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파산법의 파산채권절의 규정은 전항의 채권에 준용한다. 다만 그 중 별제권 및 우선권에 관한 규정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취소권, 해제권 또는 상쇄권의 행사는 구조조정인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297조 구조조정 채권인은 충분한 그 권리 존재를 증명하는 문건을 제출하여 구조조정 감독인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후 그 시효는 중단된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조조정 절차에 따라 변제받을 수 없다.

회사의 기명 주주의 권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른다. 무기명 주주의 권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조조정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전 두 항의 신고인은 자신의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충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구조조정 계획이 이미 관계인회의에서 의결될 시 보충하여 신고할 수 없다.

제298조 구조조정 감독인은 권리신고 기간이 만료한 후 그 초기 심사결과를 각각 구조조정 채권인, 유담보 구조조정 채권인, 무담보 구조조정 채권인 및 주주 장부를 작성하여 권리의 성격, 금액 및 의결권 수를 명기하고 제289조 제1항 제2관 일자의 3일 이전에 법원에 신고하고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비치 시작일 및 장소를 공고하여 구조조정 채권인,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열람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채권인의 의결권은 그 채권의 금액 비율로 정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299조 법원은 구조조정 채권 및 주주권의 일자를 심사하고 구조조정 감독인, 구조조정인 및 회사책임자는 현장 도착하여 구조조정 채권인, 주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현장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채권 또는 주주권은 법원이 재정한다.

채권 또는 주주권에 실체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이 전항의 재정 송달 후 20일 이내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기소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소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전항의 재정 내용 및 액수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한다. 다만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을 시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채권 또는 주주권은 법원이 심사 종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의제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확정된 것으로 본다. 회사 및 전체 주주, 채권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300조 구조조정 채권인 및 주주가 회사의 구조조정 관계인으로 관계인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나 유고로 출석할 수 없을 시 타인에게 대리 출석을 위탁할 수 있다.

관계인 회의는 구조조정 감독인이 의장이 되며 아울러 제1차 이외의 관계인 회의를 소집한다.

구조조정 감독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시 5일 전에 회의사유를 정하고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1차 집회를 완료

할 수 없고 구조조정 감독인이 현장에서 연속 또는 연장 개최를 선고하는 경우 통지 또는 공고를 면제할 수 있다.

관계인 회의의 개회 시 구조조정인 및 회사책임자는 열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질의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제301조 관계인 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一. 회사의 업무와 재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二. 구조조정 계획의 심의 및 의결.

三. 그 밖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

제302조 관계인 회의는 각각 제29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인이 팀을 구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며 그 의결은 각 팀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실시한다.

회사는 자본이 없을 시 주주팀은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303조 구조조정인은 구조조정 계획을 결정하여 회사 업무 및 재무재표와 함께 제1차 관계인 회의의 심사에 제청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인을 제290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임한 경우 구조조정 계획은 신임 구조조정인이 1개원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4조 회사의 구조조정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一. 전부 또는 일부 구조조정 채권인 또는 주주권리의 변경.

二. 전부 또는 일부 영업의 변경.

三. 재산의 처분.

四. 채무 상환방법 및 그 자금 출처.

五. 회사 자산의 가격 추정 기준 및 방법.

六. 정관의 변경.

七. 직원의 조정 또는 감원.

八. 신주 또는 회사채의 발행.

九. 그 밖의 필요 사항.

전항의 구조조정 계획의 집행은 채무 변제 기한을 제외하고 법원의 인가확정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1년 이내에 완성할 수 없을 시 구조조정 감독인의 허가를 거쳐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조정의 종료를 재정할 수 있다.

제305조 구조조정 계획이 관계인 회의를 거쳐 의결 가능한 경우 구조조정인은 법원에 인가 후 집행할 것을 신청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법원이 인가하는 구조조정 계획은 회사 및 관계인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기재된 지급 의무는 강제집행하는 목적에 적합한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306조 구조조정 계획이 관계인 회의의 표결권을 소유한 각 팀에 의해 가결되지 않을 시 구조조정 감독인은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정합리의 원칙에 따라 방침의 변경을 지시하고 관계인 회의가 1개월 이내에 재차 심사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전항의 구조조정 계획은 변경 재심사의 지시에 의하여도 여전히 관계인 회의의 가결을 얻지 못하였을 시 구조조정의 종료를 재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확실히 구조조정의 가치가 있는 경우 법원은 동의하지 아니하는 팀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여 인가를 재정할 수 있다.

一. 유담보 구조조정 채권인의 담보한 재산은 채권에 따라 구조조정 후의 회사에 따라 그 권리는 여전히 존속되며 변하지 아니한다.

二. 유담보 구조조정 채권인의 담보에 대한 재산, 무담보 구조조정 채권인의 그 채권을 변제 가능한 재산, 주주의 충분히 분배 가능한 잔여 재산은 모두 각각 공정거래가격에 따라 그 몫을 분배하며 변제 또는 분배 인수하거나 공탁에 처한다.

三. 그 밖의 회사의 업무 유지 및 채권인의 권리 보장에 유리한 공

정하고 합리적인 방법.

전 조 제1항 또는 전항의 구조조정 계획이 사정의 변화 또는 정당한 이유로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할 필요가 없어지면 법원은 구조조정 감독인, 구조조정인 또는 관계인의 신청으로 관계인 회의에서 재차 심사할 것을 재정하고 구조조정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뚜렷이 없는 경우 구조조정의 중지를 재정할 수 있다.

전항의 재심사 가결의 구조조정 계획은 법원의 인가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계인 회의는 구조조정 중재를 회사에 송달한 후 1년 이내에 구조조정 계획을 가결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구조조정의 중지를 재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제3항의 재정에 따라 재심사를 명령하였으나 1년 이내에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307조 법원이 전 2조의 처리를 할 시 주관기관, 목적 사업기관의 주관기관 및 증권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조조정의 중지를 재정한 후 재정서를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 확정 시 주관기관은 즉시 구조조정의 중지 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파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그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308조 법원이 구조조정의 중지를 재정하고 직권에 따라 회사의 파산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법의 규정 이외에 다음의 효력이 있다.

一. 제287조, 제294조, 제295조 또는 제296조의 처분 또는 발생하는 효력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한다.

二. 권리 신고의 태만으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한다.

三. 구조조정의 재정으로 인하여 정지한 주주회, 이사 및 감찰인의 직권은 즉시 회복되어야 한다.

제309조 회사의 구조조정 중 다음 각 관의 규정은 만약 사실과 관련이 있을 시 구조조정인의 법원 신청으로 별도로 적당한 처리를 재정할 수 있다.

一. 제277조의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

二. 제278조의 증자에 관한 규정

三. 제279조 및 제281조의 감자의 통지와 공고 기간 및 제한에 관한 규정.

四. 제268조에서 제270조 및 제276조의 신주 발행에 관한 규정.

五. 제248조에서 제250조의 회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六. 제128조, 제133조, 제148조에서 제150조 및 제155조의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

七 제272조의 출자 종류에 관한 규정.

제310조 회사의 구조조정인은 구조조정 계획이 규정하는 기간 내에 구조조정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완료 시 법원에 구조조정의 완성에 대한 재정을 신청하고 재정 확정 후 구조조정 후의 주주회를 소집하여 이사, 감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항의 이사, 감찰인의 취임 후 구조조정인과 주관기관에 등기 신청하거나 등기 변경하여야 한다.

제311조 회사가 구조조정을 완료하면 다음의 효력이 있다.

一. 이미 신고한 채권의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부분은 구조조정 계획의 처리에 따라 구조조정 후의 회사에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 역시 동일하다.

二. 주주권의 구조조정을 거쳐 변경 또는 감자한 부분의 권리는 소멸한다. 신고하지 아니한 무기명 주주의 권리 역시 동일하다.

三. 구조조정의 재정 전 회사의 파산, 조정, 강제집행 및 재산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 등의 절차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회사채권인의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인 및 그 밖의 공동 채무인의 권리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12조 다음 각 관은 회사의 구조조정 채무이며 구조조정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一. 회사의 업무를 계속 경영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채무.

二.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전항의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구조조정 중지의 재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13조 조사인, 구조조정 감독인 또는 구조조정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써 주의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보수는 법원이 직무의 정도에 따라 정한다.

조사인, 구조조정 감독인 또는 구조조정인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시 회사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조사인, 구조조정 감독인 또는 구조조정인은 직무 상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단기징역에 처하거나 신대만폐 6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거나 병과한다.

제314조 이 절의 공고의 재정 또는 항고의 통지 송달의 관할 및 신청 등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절 해산, 합병 및 분할

제315조 주식유한공사에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산하여야 한다.

一. 정관이 규정하는 해산 사유.

二. 회사가 영업하는 사업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또는 성취될 수 없

는 경우.

三. 주주회가 해산 의결을 한 경우.

四. 기명 주식의 주주가 2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정부 또는 법인 주주가 1인인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五. 타회사와의 합병.

六. 분할.

七. 파산.

八. 해산의 명령 또는 재판.

전항 제1관은 주주회의의 정관을 변경한 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4관의 본문은 기명 주주를 증가하여 계속 경영할 수 있다.

제316조 주주회는 회사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의 의결에 대하여 기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가 전항의 일정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발행 주식 총수 과반수를 대표하는 주주의 출석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전 두 항의 출석 주주의 주식 총수 및 의결권 수에 대하여 정관에 비교적 높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사의 해산 시 파산을 제외하고 이사회는 해산의 요지를 각 주주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경우 아울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6-1조 주식유한공사의 상호 간의 합병 또는 주식유한공사와 유한공사가 합병하는 경우 그 존속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유한공사로 한한다.

주식유한공사를 분할하는 경우 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유한공사로 한한다.

제316-2조 지주회사가 소속회사의 90% 이상의 기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이사회는 3분의 2 이상의 이사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그 소속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합병 의결은 제316조 제1항에서 제3항의 주주회 의결에 관한 유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속회사의 이사회는 전항의 결의를 한 후 각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사의 기한을 지정하여 주주가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회사가 당시의 공정 가격에 따라 그 소유 주식을 수매하도록 공표한다.

소속회사의 주주와 소속회사 간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회사는 주주회의 의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주주는 이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가격의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소속회사 주주의 주식 수매 청구는 회사가 합병의 취소를 의결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주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 또는 신청하지 아니할 시 역시 동일하다.

제319조의 이의를 제기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매에 관한 규정은 지주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회사의 정관을 개정한 경우에도 여전에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7조 회사를 분할 또는 타회사와 합병하였을 시 이사회는 분할, 합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분할계획,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주주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주가 집회 전 또는 집회 중에 서면으로 이의를 표시하거나 또는 구두로 이의를 표시하여 기록에 남긴 경우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당시의 공정가격에 따라 그가 소유한 주식을 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타회사가 신설회사인 경우 피분할회사의 주주회는 타회사의 발기인회의로 간주하며 동시에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7조 및 제188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17-1조 전 조 제1항이 말하는 합병 계약은 서면의 형식을 채택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합병한 회사의 명칭. 합병 후 존속회사의 명칭 또는 신설회사

의 명칭.

二.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수량.

三.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당 발행한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수량과 배당 발행방법 및 그 밖의 관련 사항.

四. 합병후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배당 발행한 주식이 1주가 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유관규정.

五. 존속회사의 정관에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설회사가 제129조에 따라 정립하여야 하는 정관.

전항의 합병계약서는 합병의 승인을 의결한 주주회에 송달하여 소집을 통지할 시 일괄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317-2조 제317조 제1항의 분할계획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一. 영업을 승계하는 기존회사의 변경이 필요한 정관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

二. 피분할회사와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영업가치, 자산, 부채, 주식전환 비율 및 계산의 근거.

三. 영업을 승계하는 회사의 기존회사가 발행한 신주 또는 신설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총수, 종류 및 수량.

四. 피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수량.

五. 피분할회사 또는 그 주주에게 배당 발행한 주식이 1주가 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시 그 관련 사항.

六.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 및 그 관련 사항.

七. 피분할회사의 감자 시 그 감자와 관련된 사항.

八. 피분할회사의 주식판매에 필요한 처리사항.

九. 타회사와 공동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의결에 기재하여야 하는 공동 회사 분할에 관한 사항.

전항의 분할계획서는 분할승인을 의결한 주주회의 소집 통지 시 일괄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317-3조 (삭제)

제318조 회사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이사회 또는 신설회사의 발기인은 채권인에게 최고절차를 완료한 후 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합병하게 되면 주식의 합병 후 효력을 발생한다. 합병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주식을 처분한 후 각각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一. 존속회사는 합병 후의 주주회를 소집하여 합병 사항을 보고하고 정관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二. 신설회사는 발기인회의를 소집하여 정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전항의 정관은 합병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9조 제73조에서 제75조까지의 규정은 주식유한공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준용한다.

제319-1조 분할 수 영업을 수양하는 기존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그 수양한 영업의 출자 범위 내에서 연대 상환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채권인의 연대 상환책임 청구권은 분할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20조 (삭제)

제321조 (삭제)

제12절 청산

제1목 일반 청산

제322조 회사의 청산은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회가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을 결정할 수 없을 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23조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하여 파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회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법원은 감찰인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기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신청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324조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절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이사와 동일하다.

제325조 청산인의 보수는 법원이 선임하여 파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회가 결정한다. 법원이 선임하여 파견한 경우 법원이 결정한다.

청산비용 및 청산인의 보수는 회사의 기존 재산 종 우선 지급한다.

제326조 청산인은 취임 후 즉시 회사의 재산 정황을 조사하고 재무재표 및 재무 목록을 작성하여 감찰인이 심사하도록 발송하고 주주회가 승인하도록 제청한 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장부를 감찰인에게 송달하여 심사하는 경우 주주회 집회 10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사에 대하여 방해, 거절 또는 회피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7조 청산인은 취임 후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인이 3개월 이내에 기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기한이 초과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산의 범위 내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성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이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는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 채권인이 청산인이 명백해 알도록 한 경우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28조 청산인은 전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한 내에 채권인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다. 다만 유담보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거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전항의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지연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회사의 자산이 그 채무의 상환에 충분한 경우 전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거친 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제329조 청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채권인은 회사의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있다. 다만 잔여재산이 이미 제330조에 따라 분배되고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분을 이미 수령한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30조 채무를 청산한 후 잔여재산은 각 주주의 주식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특별주를 발행하고 정관 중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31조 청산 완료 시 청산인은 15일 이내에 청산 기한 내의 수지표, 손익표를 각 항목의 장부와 함께 작성하여 감찰인이 심사하도록 송부하고 주주회가 승인하도록 제청하여야 한다.

주주회는 별도로 조사인을 선임하고 전항의 장부가 확실한 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장부는 주주회의 승인을 거치면 회사가 이미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청산인에게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청산기한 내의 수지표 및 손익표는 주주회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이 전항의 신고기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각각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의 조사를 방해, 거절 또는 회피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 회사는 청산을 완료한 후 법원에 신고한 날로부터 각 장부 및 문건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인은 청산인 및 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지정한다.

제333조 청산완료 후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 파견하여 재차 분배하여야 한다.

제334조 제83조에서 제86조, 제87조 제3항, 제4항,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주식유한공사의 청산에 준용한다.

제2목 특별 청산

제335조 청산의 실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면 법원은 채권인, 청산인 또는 주주의 직권에 따라 회사가 특별 청산을 개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역시

동일하다.

다만 그 신청은 청산인에 한한다.

제294조의 파산, 조정 및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당연히 중지하여야 하는 규정은 특별 청산에 준용한다.

제336조 법원은 전 조의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에 따라 특별 청산의 개시를 명령하기 전에 사전에 제339조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337조 중요한 사유가 있을 시 법원은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인이 공석이거나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을 시 법원이 선임 파견한다.

제338조 법원은 수시로 청산인에게 명령하여 청산 사유 및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청산 감독 상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9조 법원은 청산 감독 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4조 제2항 제1관, 제2관 또는 제6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40조 회사는 그 채무의 청산에 대하여 그 채권액의 비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 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41조 청산인은 청산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채권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사가 명백히 알고 있는 채권 점유액이 10% 이상인 채권인은 서

면으로 사유를 명기하고 청산인이 채권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3조 제2항은 전항에 준용한다.

전 조의 단서조항이 규정하는 채권은 제2항의 채권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2조 채권인회의의 소집인은 전 조 제2항 채권의 채권인에 대하여 채권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며 표결권이 없음을 통지할 수 있다.

제343조 제172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176조, 제183조, 제298조 제2항 및 파산법 제123조의 규정은 특별 청산에 준용한다.

제344조 청산인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조사서, 자산부채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산실행의 방침과 예정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345조 채권인회의는 의결로 감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시로 해임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견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6조 청산인이 다음 각 관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감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구하지 아니할 시 채권인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목표가 자산 총가치의 1‰ 이하인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一. 회사 재산의 처분.

二. 대출.

三. 소의 제기.

四. 계약의 조정 또는 중재.

五. 권리의 포기.

채권인회의가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에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 청산인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전항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청산인이 전 두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회사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은 특별 청산에 준용한다.

제347조 청산인은 감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채권인회의에 협정에 대한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8조 협정의 조건은 각 채권인에게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제340조의 단서 조항이 규정하는 채권은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49조 청산인은 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제340조 단서 조항이 규정하는 채권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0조 협정의 가결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인의 과반수 출석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법 제1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협정에 준용한다.

제351조 협정의 실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전 4조의 규정에 준용할 수 있다.

제352조 회사 재산의 상황에 필요하면 법원은 청산인 또는 감리인 또는 계속 6개월 이상 기발행 주식 총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특별 청산을 위하여 신청한 채권인, 또는 회사가 명백히 채권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채권인의 신청에 근거하거나 직권에 따라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제285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

제353조 조사인은 다음 조사 결과의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 발기인,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청산인이 제34조, 제148조, 제155조, 제193조 및 제224조에 따라 책임 부담 여부의 사실.

二. 회사의 재산 보전처분의 유무.

三.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발기인,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청산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의 필요 유무.

제354조 법원은 전 조의 보고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一. 회사 재산의 보전 처분.

二. 기명식 주식 양도의 금지.

三. 발기인,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청산인 책임 해제의 금지.

四. 발기인,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청산인 책임 해제의 철회. 다만 특별 청산의 개시 후 1년 이전이 이미 해제하였고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이에 제한하지 아니한다.

五. 발기인,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청산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사정.

六. 전 관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인하여 발기인, 이사, 감찰인, 경영인 또는 청산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제355조 법원은 특별 청산의 개시를 명령한 후 협정이 불가능할 시 직권과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며 협정의 실행 상 불가능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356조 이 목에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 청산 사항은 일반 청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삭제)

제357조 (삭제)

제358조 (삭제)

제359조 (삭제)

제360조 (삭제)

제361조 (삭제)

제362조 (삭제)

제363조 (삭제)

제364조 (삭제)

제365조 (삭제)

제366조 (삭제)

제367조 (삭제)

제368조 (삭제)

제369조 (삭제)

제6장의 1 관계기업

제369-1조 이 법에서 관계기업이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상호 간에 다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一. 통제와 소속 관계가 있는 회사.

二. 서로 투자한 회사.

제369-2조 회사가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이 있고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액의 반수를 초과하는 통제회사인 경우 같은 타회사는 소속회사이다.

전 항을 제외하고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회사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 역시 통제회사이며 같은 타회

사는 소속회사이다.

제369-3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통제와 소속관계로 추정한다.

一. 회사와 타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주주 또는 이사가 반수 이상 동일한 경우.

二. 회사와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반수 이상의 동일한 주주가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제369-4조 통제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속회사가 영업의 통상적인 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이 있는 경영을 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시에 적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 소속회사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통제회사의 책임자가 소속회사에게 전 조의 경영을 하게 한 경우 통제회사와 전 항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통제회사가 제1항의 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소속회사의 채권인 또는 계속 1년 이상 소속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자신의 명의로 전 두 항의 소속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소속회사에 대해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의 권리의 행사는 소속회사가 같은 배상청구권리에 대하여 내린 조정 또는 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69-5조 통제회사가 소속회사에게 전 조 1항의 경영을 하게 하여 타 소속회사에게 이익을 보게 하고 이익을 본 같은 타 소속회사가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통제회사에 대하여 전 조가 규정하는 배상을 부담하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369-6조 전 두 조가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통제회사가 배상책임이 있음을 알거나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아는 시점부터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통제회사의 배상책임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초과한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369-7조 통제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속회사가 영업의 통상적인 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경영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통제회사가 소속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채권은 통제회사가 소속회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한도 내에서 그 상쇄를 주장할 수 없다.

전항의 채권은 별제권 또는 우선권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속회사가 파산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산 또는 중재를 하거나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특별 청산을 실시할 시 소속회사의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369-8조 회사가 타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액이 있고 같은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사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같은 타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전 항의 통지를 한 후 다음의 변동 사항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실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차 통지하여야 한다.

一.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이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 보다 적은 경우.

二.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이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三. 전 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이 재차 타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2분의 1 보다 적은 경우.

통지를 접수한 회사는 전 두 항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중에 회사의 명칭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한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전 3항의 통지 또는 공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각각 신대만폐 6천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관기관은 아울러 기한부 처를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부 처리를 명령하고 회수에 따라 연속하여 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신대만폐 9천원 이상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69-9조 회사와 타회사가 서로 투자한 금액이 각각 상대방의 의결권이 있

는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 서로 투자한 회사이다.

서로 투자한 회사가 각각 상대방이 기발행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인사, 재무 또는 업무의 경영을 통제하는 경우 서로 통제회사이면서 소속회사이다.

제369-10조 서로 투자한 회사가 서로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피투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기발행 주식 총수 또는 자본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윤 또는 적립금의 증자 배당소득의 주식은 여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제369조 8의 규정에 따라 타회사에 통지한 후 타회사의 동일한 통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역시 서로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는 전항의 규정을 받지 아니한다.

제369-11조 이 장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액의 계산은 다음 각 관의 주식 또는 출자액과 함께 기입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소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액.

二. 제삼자가 같은 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

三. 제삼자가 같은 회사의 소속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

제369-12조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소속회사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그

회사와 통제회사 간의 관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호 간의 법률행위, 자금왕래 및 손익정황을 명기하여야 한다.

주식을 공개발행한 회사의 통제회사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면 관계기업의 영업합병 보고서 및 재무합병 보고표를 편성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문건의 작성 준칙은 증권관리기관이 정한다.

제7장 외국회사

제370조 외국회사의 명칭은 중국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그 종류를 명기하고 국적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71조 외국회사는 그 본국에 설립 등기하여 영업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사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

제372조 외국회사는 그가 중화민국 국경 내에 영업하는데 사용한 자금을 특별히 할당하고 주관기관이 그 영업하는 사업에 대한 최저자본액 규정의 제한을 수용하여야 한다.

외국회사는 중화민국 국경 내에 소송 및 비소송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가 중화민국 국경 내의 회사책임자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3조 외국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허가하지 아니한다.

一. 그 목적 또는 업무가 중화민국 법률,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경우.

二. 회사의 허가 사항 또는 문건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374조 외국회사는 허가를 받은 후 정관을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정된 소송 및 비소송 대리인의 장소에 비치하거나 그 지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만약 무한책임주주인 경우 그 명단도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책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관 또는 무한책임주주 명단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속으로 거절하고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에 따라 연속하여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5조 외국회사는 허가를 받은 후 법률 상의 권리의무 및 주관기관의 관할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민국 회사와 동일하다.

제376조 (삭제)

제37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에서 제25조까지 외국회사에 준용한다.

제378조 외국회사가 허가를 받은 후에도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계속 영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주관기관에 허가의 철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회 신청 이전에 부담하고 있는 책임 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없다.

제379조 외국회사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허가를 철회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一. 허가 신청 시 보고한 사항 또는 교부한 문건이 조사를 거쳐 허위 사실이 있음이 판명난 경우.

二. 회사가 이미 해산한 경우.

三. 회사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전 항의 허가 철회 또는 폐지는 채권인의 권리 및 회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380조 허가가 철회, 취소 또는 폐지된 외국회사는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업 또는 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 청산이 종결에 있어 아직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채무는 여전히 같은 외국회사가 변제하여야 한다.

전항의 청산은 외국회사가 중화민국 국경 내의 책임자 또는 지사의 경영인을 청산인으로 하며 외국회사의 성격에 따라 이 법의 각종 회사의 청산 절차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용한다.

제381조 외국회사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재산은 청산기간 중 중화민국 국경 밖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청산인이 청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할 수 없다.

제382조 중화민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회사의 책임자 또는 지사의 경영자가 전 두 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외국회사의 중화민국 국경 내의 영업 또는 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는 같은 외국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83조 (삭제)

제384조 주관기관은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영업과 관련된 장부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다.

제385조 제372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인은 교체 또는 출국 전에 외국회사가 별도로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성명, 국적, 주소 또는 거주지를 주관기관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86조 외국외사가 중화민국 국경 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할 의사가 없고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그 대리인을 파견하여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업무 상의 법률행위를 할 시 다음 각 관의 사항을 명기하여 주관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 회사의 명칭, 종류, 국적 및 소재지.

二. 회사 자본금 총액 및 자국에서 설립 등기한 연, 월, 일.

三.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및 그 대표인이 중화민국 국경 내에서 한 업무 상의 법률 행위.

四. 중화민국 국경 내에 소송 및 비소송을 지정한 대리인의 성명, 국적, 주소 및 거주지.

전항의 대표인이 반드시 일상적으로 중화민국 국경 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 대표인사무소를 설립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명기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전 두 항의 등록 신청문건은 그 자국의 주관기관 또는 그 대표인이

법률 상의 법률행위를 한 행위지 또는 그 대표인사무소 소재지의 중화민국 영사관, 대표처, 사무처 또는 그 밖의 외교부가 수권하는 기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회사가 대표인의 파견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민국 국경 내에 대표인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제8장 회사의 등기 및 허가

제1절 신청

제387조 회사의 등기 또는 허가는 대표회사의 책임자가 신청서를 구비하고 필수 구비문건 1부와 함께 중앙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시 위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리인은 회계사, 변호사에 한한다.

회사의 등기 또는 허가사항 및 변경에 대한 방법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전항의 방법은 신청인, 신청서류, 신청방식, 신청기한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제4항의 방법이 규정하는 신청기한을 위반한 경우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제4항의 방법이 규정하는 신청기한에 따라 등기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령

하는 것 이외에도 신대만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회수에 따라 연속하여 시정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신대만폐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8조 주관기관은 회사가 등기한 신청에 대하여 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정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령하고 적법하게 시정하지 아니하면 등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9조 (삭제)

제390조 (삭제)

제391조 회사의 등기에 있어 신청인이 등기 후 그 등기사항에 확실히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2조 등기 사항 증명의 청구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3조 회사의 등기문건에 대하여 회사책임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유를 서술하고 열람 또는 필사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필사를 거절하거나 그 필사와 열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음에 나열한 회사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공개하여야 하며 어떠한 자도 주관기관에 열람 또는 필사를 신청할 수 있다.

一. 회사 명칭.

二. 경영하는 사업.

三. 회사 소재지.

四.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하는 주주.

五. 이사, 감찰인의 성명 및 소유주

六. 경영인의 성명.

七. 자본총액 또는 실제 납입자본액.

八. 회사의 정관.

전항의 제1관에서 제7관까지 어떠한 자도 주관기관의 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394조 (삭제)

제395조 (삭제)

제396조 (삭제)

제397조 회사의 해산에 있어 주관기관에 해산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기관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전항의 말소에 대하여 해산의 명령 또는 해산의 재정 이외에도 3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 회사책임자에게 이의의 제기를 최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성명하지 아니하거나 성명이유가 불충분한 경우 그 등기를 폐지한다.

제398조 (삭제)

제399조 (삭제)

제400조 (삭제)

제401조 (삭제)

제402조 (삭제)

제402-1조 (삭제)

제403조 (삭제)

제404조 (삭제)

제405조 (삭제)

제406조 (삭제)

제407조 (삭제)

제408조 (삭제)

제409조 (삭제)

제410조 (삭제)

제411조 (삭제)

제412조 (삭제)

제413조 (삭제)

제414조 (삭제)

제415조 (삭제)

제416조 (삭제)

제417조 (삭제)

제418조 (삭제)

제419조 (삭제)

제420조 (삭제)

제421조 (삭제)

제422조 (삭제)

제423조 (삭제)

제424조 (삭제)

제425조 (삭제)

제426조 (삭제)

제427조 (삭제)

제428조 (삭제)

제429조 (삭제)

제430조 (삭제)

제431조 (삭제)

제432조 (삭제)

제433조 (삭제)

제434조 (삭제)

제435조 (삭제)

제436조 (삭제)

제437조 (삭제)

제2절 수수료

제438조 이 법에 따른 회사의 명칭 수리 및 경영하는 사업의 사전 조사, 등기, 열람, 필사 및 각종 증명서 등의 신청은 심사비, 등기비, 열람비, 필사비 및 증명비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중앙 주관기관이 정한다.

제439조 (삭제)

제440조 (삭제)

제441조 (삭제)

제442조 (삭제)

제443조 (삭제)

제444조 (삭제)

제445조 (삭제)

제446조 (삭제)

제9장 부칙

제447조 (삭제)

제448조 이 법이 정하는 벌금을 거절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이송하여 강제집행한다.

제449조 이 법에서 중화민국 86년 6월 25일에 개정 공포한 제373조, 제

383조의 시행일자는 행정원이 정하며 아울러 98년 5월 5일에 개정한 조문을 98년 11월 23일에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